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국회 요구자료

2022년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목 차 ■

I. “한국판 T4 프로그램”이란?

.....	5쪽
-------	----

II.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자료

■ 예산 요구(전 부처) 개괄	11쪽
■ 예산 요구(보건복지부) 개괄	12쪽
■ 예산 요구(국토교통부) 개괄	17쪽
■ 예산 요구(교육부) 개괄	19쪽
■ 예산 요구(고용노동부) 개괄	20쪽
■ 예산 요구(문화체육관광부) 개괄	22쪽
1. 장애인활동지원	25쪽
2.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32쪽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36쪽
4.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38쪽
5.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40쪽
6.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43쪽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47쪽
8. 뇌병변장애인 지원	50쪽
9. 뇌병변장애인(중증중복) 의사소통 지원	53쪽
10.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8쪽
11. 저상버스 도입보조	62쪽
12.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65쪽
13.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68쪽
14.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운영비) 지원	70쪽
15.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2쪽

16.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74쪽
17.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76쪽
18. 장애인평생학습도시	81쪽
19.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확대)	83쪽
20.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개편)	87쪽
21. 장애인취업지원(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91쪽
22. 장애인취업지원(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96쪽
23. 장애인취업지원(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100쪽
24. 장애인 언론 지원	105쪽
25.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	108쪽
2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111쪽
27. 함께누리지원사업	114쪽
28.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117쪽

Ⅲ. 장애인권리입법 요구자료

■ 입법 요구 개괄	121쪽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23쪽
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129쪽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136쪽
4.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139쪽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143쪽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51쪽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154쪽
8.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157쪽
9.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160쪽
10. 공직선거법 개정	163쪽
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66쪽
12. 장애인연금법 개정	170쪽

“한국판 T4 프로그램” 이란?

대한민국은

“

T4

”

사회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살 권리도 없다.

약 70,000명의 장애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1929년 아돌프 히틀러

T4를 아십니까? 익히 알려진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전, 장애인의 학살이 존재했습니다. 나치는 장애인들이 사회 체제와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및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선전을 강화하고 30만 명(최소 추산)이 넘는 장애인을 학살했습니다.

3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국가에 신고토록 하고 17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둔 부모에게 자녀를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권장했습니다. 병동에 입원한 장애 아동들은 약물 과다복용이나 굶주림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장애 아동 살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모든 연령의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혔고 담당 사무실이 있는 주소(Tiergartenstraße 4)를 따와서 T4 작전(Aktion T4)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애인 학살의 근거는, 단기적으로는 식량을 아끼려는 목표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지키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불량품이 있는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잘 진화된 사람들만 모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생학(Eugenics)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가정의 하루 생활비가 5.5라이히스마르크(약 4만원)인데
유전병 환자 한 명의 하루 생활비와 치료비가 12라이히스마르크(약 8만원)라면
독일 국민이 잃은 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어지는 아이들의 대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해야해요?"

"죽여야지."

- 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Forgive Us Our Trespasses, 2022)> 중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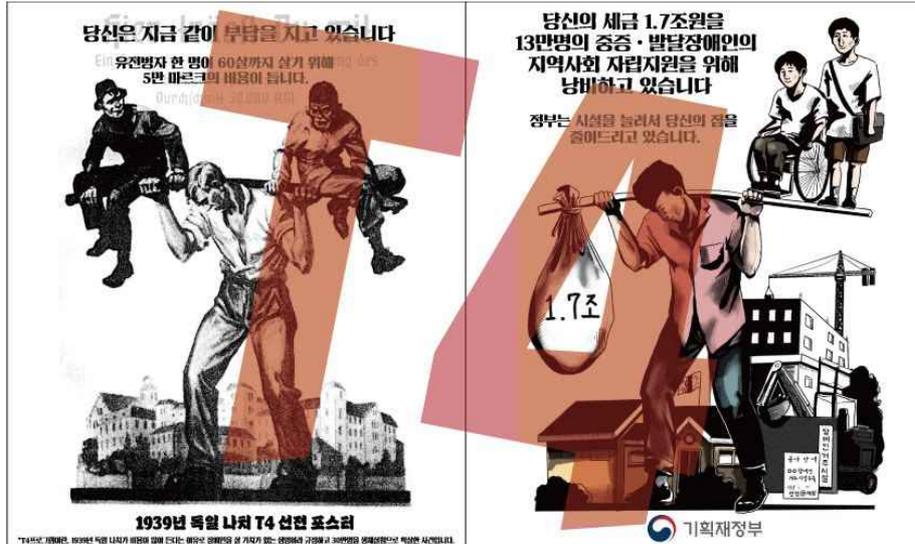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자)
그거 다 담아내면은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겁
니다.”
“자꾸 기획재정부만 갖고 이렇게 떠드는 게 아
니라(...).”

- 2022년 7월 2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전장연과 면담 중 발언 일부



우생학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을 ‘돈 낭비’로 규정하여 학살을 자행했던 1939년 독일 나치의 ‘T4 프로그램’. 이는 2022년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는 비용의 문제로, 중증장애인을 감옥과도 같은 집단적인 수용 형태의 ‘거주시설’에 보냅니다. 발달·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살해·자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감제는 소신 있게 결단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은 ‘나라 곳간 축내는 낭비’로 여기는, 기획재정부가 바로 ”한국판 T4 프로그램“의 실체입니다.

1939년 나치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 2022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판 T4 교육영상
보러 가기

▲나치의 T4 선전에 빗대어 한국판 T4를 묘사한 선전 포스터

한 · 국 · 판 · T4 · 를 · 철 · 폐 · 하 · 는 · 시 · 민 · 행 · 동 · 제 · 안

-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에 ‘한국판 T4 선전 포스터’ 를 부착해주세요!
 - 우리 동네 또는 나에게 의미 있는 물건에 ‘한국판 T4 선전 포스터’ 를 부착해주세요!
 - 곳곳에 부착한 ‘한국판 T4 선전 포스터’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기!
- #기획재정부는_한국판_T4_프로그램을_멈춰라 #장애인권리에산_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
한국판T4프로그램 철폐하라!**

**장애인권리예산
국회 요구자료**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자료

(단위 : 백만원)

주요부처	2022 예산	2023 정부안(A)	2023 요구안(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합계	2,268,159	2,683,273	4,285,646	1,602,373	-
보건복지부	1,893,379	2,180,954	3,124,559	943,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행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뇌병변장애인 지원, 의사소통지원 확대 - 뇌병변장애인 보조기기 품목·급여 확대
국토교통부	110,136	218,721	584,201	365,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운영비) 확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시행
교육부	1,500	5,300	23,487	18,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
고용노동부	212,843	224,004	491,727	267,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 개편 -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50,301	54,294	61,672	7,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 보도지원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확대 - 함께누리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1,893,379	2,180,954	3,124,559	943,605	-
장애인활동 지원 (1535-304)	장애인 활동지원	계속	1,740,523	1,991,879	2,645,851	653,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 총 2,645,851백만원(증 653,97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안정화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 : 15,570원 → 17,000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원 115,000명 → 125,000명 ▶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월 평균 지원시간 확대 : 127시간 → 150시간 ▶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확대 : 가산수당 3,000원 → 5,000원 / 평균시간 151.5시간 → 170시간 ▶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대상 확대 : 508명 → 2,000명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1,740,5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 1,828,2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수가 : ('22)14,805원 → ('23)15,570원 - 대상 인원 : ('22)107,000명 → ('23)115,000명 - 월 평균 지원시간 : 127시간 (전년동) ▶ 가산수당 : 21,92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수가 ('22)2,000원 → ('23)3,000원 - 대상 인원 ('22)4,000명 → ('23)6,000명 - 월 평균시간 ('22)140시간 → ('23)151.5시간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11,721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주간활동 서비스	계속	140,786	173,504	180,995	7,491	<input type="checkbox"/>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시행 <input type="checkbox"/> 총 180,995백만원(증 7,491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자체별 1개소 설치·운영 - 행동지원형: 10명 × 9개소 × 31,140원 × 176시간 × 12개월 × 67% = 3,965백만원 - 의료지원형: 10명 × 8개소 × 31,140원 × 176시간 × 12개월 × 67% = 3,525백만원 <input type="checkbox"/>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173,504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 월 평균 154시간, 대상인원 10,000명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계속	500	1,000	5,000	4,000	<input type="checkbox"/> 전체 발달장애인(약 25만명) 대상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input type="checkbox"/> 총 5,000백만원 (증 4,000백만원) ※ '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 4만 5000명 표본조사 시 10억원 소요 <input type="checkbox"/>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1,000백만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속	-	-	17,156	17,156	<input type="checkbox"/> 중앙 및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input type="checkbox"/> 총 17,156백만원(순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1개소) : 600백만원 - 인건비(7명), 운영비, 연구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회의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 17개소) : 4,556백만원 - 1개소당 400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초, 100개소) : 12,000백만원 - 1개소당 300백만원, 국고보조율 40%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계속	-	-	2,728	2,728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지원 <input type="checkbox"/> 총 2,728백만원(순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형 발달장애인가조단체 지원 : 2,278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각 1개소), 1개소당 200백만원 ▶ 발달장애인가조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기관 운영 : 300백만원 ▶ 발달장애인가조단체대회 운영 지원 : 150백만원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	신규	-	-	227,800	227,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택 '23년 연내 1만호 공급 ○ 총 227,800백만원(순증) - 3,400만원 × 10,000명 × 67% = 227,800백만원 ※ 지원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주거의 소유권을 갖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주거유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거 모델. 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거관리부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계속	2,154	4,834	19,124	14,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권리확보 ○ 총 19,124백만원(증 14,290백만원) ※ 사업 명칭 변경 요구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사업 규모 : '22년도 200명(12개월), '23년도 200명(6개월) 기준 (정부안과 동일)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 7,344백만원 - 월 80시간 → 월 240시간 ▶ 자립 정착금(1인당 2,000만원) : 4,000백만원 ▶ 주거유지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 20개 기관, 지원인력 280명 : 기관당 자립지원사 10명, 기관당 간접지원인력(총괄 1명, 사무 1명, 간호 1명, 치료 1명) 기준 - 운영비 18백만원, 인건비 5,075백만원 ▶ 건강검진 및 치료·상담지원비 : 880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80백만원(정부안 포함), 치과치료비 400백만원(추가), 심리행동지원비 400백만원(추가) ▶ 주거환경개선비 : 600백만원 (정부안과 동일) ▶ 보조기기 및 IoT지원비 : 557백만원 - 보조기기 300백만원(정부안 포함), IoT지원비 257백만원(추가) ▶ 시범사업운영비(제도개선 연구개발비) : 650백만원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4,834백만원 ▶ 자립지원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 1,497백만원 - 인건비 : ('22)2,648천원 → ('23)2,701천원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 2,242백만원 - 지원시간 : ('22)월 60시간 → ('23)월 80시간 ▶ 주거환경개선비 : 600백만원 ▶ 보조기기 지원 : 300백만원 ▶ 건강검진 지원 : 80백만원 ▶ 시범사업 운영 115백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542-3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계속	4,756	4,852	9,000	4,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총 9,000백만원(증 4,148백만원) ▶ 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 ▶ 개소당 사업비 확대 : 1.62억 원 → 2.5억 원 ○ 2023년 정부 예산안 : 총 4,756백만원 ▶ 개소수 : 75개소 (전년동) ▶ 사업비(국비) : ('22)1.58억 원 → ('23)1.62억 원
뇌병변장애 인 지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신규	-	-	4,000	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 ○ 총 4,000백만원(순증) ▶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3개소 (5인 기준 인건비, 운영비, 정보제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공 연구비, 교육 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 개발 등) ▶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수술비 지원 : 2,500백만원 - 1.5백만원 × 통증관리 1,000명 + 10백만원 × 긴급지 원 100명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신규	-	-	1,620	1,620	□ 뇌병변(중증중복)장애인 의사소통지원(기기·중재·서비스) ○ 총 1,620백만원(순증)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신규 설치 : 900백만원 * '시·도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 경북, 경기, 부산 3개 광역지자체 설치 ▶ 사회참여를 위한 의사소통환경구축 : 420백만원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대상자 시범사업 : 7백만원 × 30명 × 2개 시·도 ▶ 하이텍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 300백만원 - 하이텍 기반 보조기기 10백만원 × 30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532-304)	보조기기 센터 설립 및 품목·급여 확대	계속	4,660	4,885	11,285	6,400	□ 보조기기 센터 설립 및 품목·급여 확대 ○ 총 6,400백만원(순증) ▶ 현 보조기기센터 부재 지역 보조기기센터 설립 : 3,000백만원 - 1개소당 500백만원, 6개소 ▶ 보조기기 급여확대 및 개별지원예산 확대 : 3,400백만 원 - 1개소당 200백만원, 17개 시·도 보조기기센터 교부

<국토교통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110,136	218,721	584,201	365,48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4932-301)	저상버스 도입 보조	계속	98,565	181,519	343,353	161,8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7,613대 신규도입 ○ 총 343,353백만원(증 161,834백만원) - 서울시: 92백만원 × 40% × 744대 - 타시도: 92백만원 × 50% × 6,869대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98,565백만원 ▶ 신규도입 4,299대 - 서울시: 92백만원 × 897대 × 40% - 그 외 시도: 92백만원 × 3,402대 × 50%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계속	9,361	10,102	14,798	4,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 664대 ○ 총 14,798백만원(증 4,696백만원) - 서울시: 46백만원 × 40% × 103대 - 타시도: 46백만원 × 50% × 561대 - 대폐차 차량은 전수조사 통해 추가 예산 배정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10,102백만원 ▶ 신규도입 456대 - 서울시: 46백만원 × 84대 × 40% - 그 외 시도: 46백만원 × 307대 × 50%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계속	500	500	3,050	2,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확대 ○ 총 3,050백만원(증 2,550백만원)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 2,000백만원 - 50백만원 × 20개 노선 × 2대 ▶ 터미널 시설 개선 : 1,000백만원 - 50백만원 × 20곳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사업관리: 50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500백만원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300백만원 - 50백만원 × 보조율50% × 12대 ▶ 터미널 개선(6개소): 150백만원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 관리: 50백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신규	-	23,750	167,500	143,750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 총 167,500백만원(증 143,750백만원) ▶ 100백만원(인건비포함) × 보조율67% × 5000대 × 6개월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23,750백만원 ▶ 19백만원(단가) × 보조율50% × 5000대 × 50%(6개월)
주거급여 지원 (1034-302)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	1,710	2,850	4,500	1,650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확대 ○ 총 4,500백만원(증 1,650백만원)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중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 6백만원 × 1500호 × 50% = 4,500백만원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2,850백만원 - 3.8백만원×1,500호×50%=2,850백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신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신규	-	-	51,000	51,000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총 51,000백만원(순증) - 200백만원 × 17개시·도 × 30가구 × 50%

<교육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1,500	5,300	23,487	18,187	-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운영 (4131-303)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신규	-	-	13,487	13,487	<input type="checkbox"/>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input type="radio"/> 총 13,487백만원(순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비 지원 : 330백만원* × 61개소 × 67% *장애성인 학습 1인당 추정 평생교육경비(7백만원×30명), 사무운영비 120백만원(상근인력 2명, 운영·임대료 등) 포함
	장애인평생 학습도시	계속	1,500	5,300	10,000	4,700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평생학습도시 <input type="radio"/> 총 10,000백만원(증 4,700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백만원 × 100개 지자체* = 10,000백만원 *계속지원 32개, 신규지정 68개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백만원 × 53개* = 5,300백만원 *계속지원 32개, 신규지정 21개

〈고용노동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212,843	224,004	491,727	267,723	-
장애인고용 관리지원 (1452-306)	근로지원인 지원	계속	204,713	216,341	365,907	149,566	<input type="checkbox"/> 근로지원인 인원수 확대 <input type="radio"/> 총 365,907백만원(증 149,566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지원인 인원수 10,000명 → 17,000명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 216,341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지원인 인원수 : 10,000명 (전년동)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452-31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계속	2,768	2,301	3,192	891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개편 <input type="radio"/> 총 3,192백만원(증 891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홍보 : 3백만원 × 17개 시도 = 51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자 인원 축소 : 6,000명 → 5,000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료지원가(300명, 인건비 월 930,000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자 수당 : 5,000원, 15회 → 6,000원, 15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슈퍼바이저 인건비 : 50만원, 70명 → 93만원, 90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자 상해보험료 : 0원 → 1인 20,000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료지원가 업무추진비 : 0원 → 1인 월 50,000원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 2,301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비(동료지원가 인건비) : 1,602백만원 - 동료지원가 인원 : ('22)400명 → ('23)300명 - 동료지원가 월 인건비 ('22)875,000원 → ('23)890,000원 - 참여자 인원 : ('22)8,000명 → ('23)6,000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업연계수당 : 180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자수당 : 225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자치단체 사업운영비 : 42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슈퍼바이저 지원금 : 210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장애인 취업지원 (1452-311)	발달장애인 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신규	-	-	5,250	5,250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input type="radio"/> 요구 예산 : 5,250백만원(순증) ▶ 50명 미만: 5개소 × 150백만원 × 100% = 750백만원 ▶ 50명 이상 ~ 100명 미만: 5개소 × 200백만원 × 100% = 1,000백만원 ▶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5개소 × 300백만원 × 100% = 1,500백만원 ▶ 200명 이상 : 5개소 × 400백만원 × 100% = 2,000백만원
	발달장애인 인턴제	신규	-	-	10,545	10,545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input type="radio"/> 요구 예산 : 10,545백만원(순증) ▶ 인턴채용지원금 : 7,200백만원 - 800,000원 × 1,000명 × 12개월 × 지급률75% ▶ 정규직전환지원금 : 3,345백만원 - 650,000원 × 1,000명 × 12개월 × 지급률64% × 정규직전환률 6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계속	5,362	5,362	106,833	101,471	<input type="checkbox"/>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input type="radio"/> 요구 예산 : 106,833백만원(증 101,471백만원)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직무지도원 일단가 40,000원 → 시간 단가 14,475원 - 지원인력 4,274명 → 5,000명 - 이용 기간 최대 36.05일 → 125시간 × 12개월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 직무지도원 수당 : 5,362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합계	-	-	50,301	54,294	61,672	7,378	-
언론공익사업 (1463-303)	인권증진 보도지원	계속	200	152	1,152	1,000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인터넷) 언론 보도지원 사업 신규화 <input type="radio"/> 총 1,152백만원(증 1,000백만원) - 200백만원 × 5개 매체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152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재지원비 : 148백만원(10사 × 14.8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운영 경비 : 4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신규	0	0	2,208	2,208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시행 <input type="radio"/> 총 2,208백만원(순증) - 시간제일자리(월80시간)/100명) - 복지일자리(월56시간)/100명)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신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신규	0	0	600	600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1개 시범 설치·운영 <input type="radio"/> 총 600백만원(순증)
함께누리 지원사업 (1633-304)	함께누리 지원사업	계속	22,580	26,084	28,354	2,270	<input type="checkbox"/> 함께누리지원사업 신규사업 추가 및 증액 <input type="radio"/> 총 28,354백만원(증 2,27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 자조모임지원 : 1,000백만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프로그램 운영: 850백만 원 - 장애인 인권영화제 : 420백만원 <input type="radio"/>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26,084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 예술역량강화 : 13,150 → 13,550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구분	2022예산	2023 정부안 (A)	2023 요구안 (B)	증액 요구 (B-A)	요구 내역 (정부안 대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1,900 → 1,900백만원 ▶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및 운영 : 5,300 → 5,30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 2,230 → 2,254백만원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및 운영 : 1,280백만원 ▶ 장애예술인 신기술기반 활동 지원 : 1,100백만원 ▶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 : 200백만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500백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5561-301)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계속	27,521	28,058	29,358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 ○ 총 29,358백만원(증 1,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1,000백만원 - 체육시설 장애인권교육 : 300백만원 ○ 2023년 정부예산안 : 총 28,0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 5,436 → 5,085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 706 → 706백만원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 16,069 → 16,509백만원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관리 : 2,020 → 2,368백만원 ▶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 2,290 → 2,390백만원 ▶ 장애인체육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 1,000 → 1,000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및 평균시간 확대 : 6,539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1535-304)	계속	일반	1,740,523	1,991,879	2,645,851	653,972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
- 사업기간 : '11 ~ 계속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 사업내용 :
 -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01.04. 제정)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 (서울 50%, 지방 70%)

2. 현황 및 필요성

1) 활동지원 평균시간 및 대상자 확대

- 2019년 7월, 31년동안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음. 이는 단일 제도의 폐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 장애계는 그동안 공급자, 행정편의 중심으로 활용되었던 복지서비스 내 일괄적 선별 기준의 폐지와 함께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환경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왔음.
-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가장 큰 과제는 활동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춰 유입률을 높이고,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양을 확보함으로써 개인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조사표 내 높은 의학적 기준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장애 유형 간 경합, **(인정조사 대비) 서비스 시간 하락 문제를 발생시켰으며(산정특례 15,933명), 대다수의 수급자를 일평균 5시간 이하인 12구간~15구간에 판정하고 있음.**

[표]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2022.06.30. 기준)

(단위 : 명, %)

구간	구분				수급자 수	
	점수	월 한도액	월 제공 시간	하루최대 이용시간	인원	비율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480	16	12	0.01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660,000원	450	15	147	0.13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217,000원	420	14	748	0.66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773,000원	390	13	456	0.4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329,000원	360	12	83	0.07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885,000원	330	11	438	0.38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440,000원	300	10	1,221	1.08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997,000원	270	9	1,293	1.14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553,000원	240	8	3,154	2.8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109,000원	210	7	3,709	3.29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665,000원	180	6	6,206	5.51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220,000원	150	5	16,279	14.47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777,000원	120	4	34,827	30.97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333,000원	90	3	32,927	29.28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89,000원	60	2	10,949	9.73
계	-	-	-	-	112,449	100%

※ 인정조사 1~4등급 4,454명, 산정특례자 15,933명 제외

- 2017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중 14.4%로 약 38만명으로 추정되지만, '23년 정부 사업계획안의 대상자는 신규로 지원하게 될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 장애인을 포함하여 117,000명에 불과하며, 현재 일 16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2명(0.01%)에 불과.** 종전과 다르지 않은 평균 시간, 수급자 증가율 등 정부는 여전히 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표] 2017년 ~ 2021년 7월 수급자 및 이용자 증가 세부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이용자	수급자	이용자	수급자	이용자	수급자	이용자	수급자	이용자
86,926	70,975	94,496	76,975	105,569	85,443	115,017	91,508	122,791	98,135

연도	수급자 증가율	이용자 증가율
2017년 ~ 2018년	8.7% 증가	8.4% 증가
2018년 ~ 2019년	11.7% 증가	11% 증가
2019년 ~ 2020년	8.9%	7%
2020년 ~ 2021년	6.7%	7.2%

※ 최혜영 의원실 자료 재구성

- 전반적으로 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임. 판정도구의 개편과 제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인 사안이나, 결국 예산이 핵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발생한 산정특례 문제 해결과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 달성 및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이행을 위해 정부 예산 계획안의 평균 시간을 확대하고 의학적 장벽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욕구 중심의 조사로 개편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비현실적 수가 문제 개선

- 활동지원의 낮은 수가는 서비스 제공기관 내 노사 갈등 유발, 기관 내 전담인력의 업무 과중과 잦은 인력 교체 등 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유사 서비스 대비 낮은 수가와 단일 단가제, 실효성 없는 가산수당 문제가 결부되어 인력 유입이 저조하며 중증장애인 미매칭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2022년 기준 돌봄 서비스 단가 비교

노인장기요양(3시간 기준)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16,800원	15,600원	14,800원

-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수가의 75%를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25%를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교육비, 통신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23년 정부안의 15,570원은 인건비 지급만으로 수가의 98%가 지급.

[표] 2023년 활동지원수가(15,570원) 대비 최저임금(9,620원) 평균 급여 계산(안)

구분		산출 근거	금액(원)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 (A)	9,620
주휴수당		9,620÷5 (B)	1,924
연차수당		15일 기준, 15÷260×9,620 (C)	555
유급휴일 수당		20일 기준, 20÷260×9,620 (D)	740
퇴직(적립)금		(A+B+C+D)÷12	1069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A+B+C+D)×4.5%	577
	건강보험	(A+B+C+D)×3.545%	45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54
	고용보험	(A+B+C+D)×1.15%	147
	산재보험	(A+B+C+D)×0.76%	97
활동지원사 인건비 소계 (가)			15,238
2023년 바우처 단가 소계 (나)		2023년 바우처수가 15,570	15,570
수가대비 인건비 차액 소계		(나)-(가)	332
수가대비 인건비 지급율			97.8%

※ 1일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함.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 4대 보험 요율은 기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해야 함. 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근로기준법 상 의무 준수와 사업 운영을 병행할 수 없는 기관들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범법 기관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터무니없는 수가가 기관들로 하여금 위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임.
- 특히 2021년 1월부터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기관 자체 수익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 문제는 활동지원사 필수 교육에 대한 시급 지급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이 과중되고, 과세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종업원분)’이 과하게 부과되는 등 불안정 요소가 만연한 기관 입장에서 이를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활동지원제도는 대한민국 내 사실상 유일한 1:1 대인 돌봄 서비스로,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공 기관을 지원 할 책임이 있음.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속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안정화 및 중증장애인의 매칭 활성화, 활동지원사와 운영 기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가대비 인건비 차액 소계가 최소 10%이상 되도록 인상하여야 함.

3)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 장애인 선택권 보장

- 정부의 '23년 제도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안은, 2020년 12월 23일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제한'의 문제를 '보전급여 방식'으로 '일부'만 해소하도록 하는 방침임.
- 정부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신설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활동지원 차감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만65세 도래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높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량 안에서 시간을 차감하는 '보전급여' 방식을 도입하였음.
- '보전급여'의 수급 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후 결정된 종합점수에서 현재 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별 점수(1등급 108점, 2등급 96점, 3등급 78점, 4등급 72점, 5등급 63점)를 차감하여 해당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42점은 활동지원 15구간으로 최저 수급 기준)를 충족해야함. 즉, 노인장기요양을 최초로 수급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급 자격에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이며,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침임.
- 이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적절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장애 등록 전 6개월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다수이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제도의 미비점과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은 것임.

[표]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장애등록 안함	2,933	21.5
	장애등록 함	10,723	78.5
	계	13,656	100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은 10,723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98.7%)이 활동지원 수급이 가능한 최종증장애인이자 평균 지원 시간 또한 125시간으로 노인장기요양 1등급(최대 108시간)의 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현행 '보전급여' 방침을 적용하면서, 이들 중 활동지원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106명(19.6%)에 불과한 실정.
-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제도임. 그동안 국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65세 미만의 노인 장기요양 수급 장애인을 차별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지원의 책임을 가족

에게 전가해왔음. 헌법불합치 결정의 온전한 이행 및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이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4)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시범사업 이후, 2011년 제도화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거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보건복지부 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22,791명, 이용자는 98,483명으로 집계 됨.

[표] 보건복지부,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8	- 중증장애인 78,202명 지원, 일자리 68,673명 창출
2019	- 장애인 86,730명 지원, 일자리 78,044명 창출
2020	- 장애인 93,115명 지원, 일자리 84,854명 창출
2021	- 장애인 98,483명 지원, 일자리 90,291명 창출 ('21.6. 기준)
2022	- 장애인 106,643명 지원, 일자리 98,821명 창출('22.6. 기준)

-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활동지원 인력 공급이 매년 증가하는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제한됨에 따라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 여러 명의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야 하는 최종증장애인의 인력 미매칭 문제가 지속·심화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예산안은 기준 6000명에 대해 3,000원의 가산수당을 책정하고, 평균 시간으로(140시간 → 151.5시간) 확대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올랐으나, 최종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도 대비 적절한 수당으로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활동지원서비스와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경우,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단가의 150%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최종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생명유지를 비롯, 삶의 기초 영역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당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산수당 확대(5,000원)가 필수적임.**

5)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확대 (보전급여)

- 2020년 12월, 활동지원 이용자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었고,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 이상 감소한 수급자들에 대해 감소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22) 508명 × 14,020원(단가) × 154시간 × 12개월 × 67% = 9,312 → ('23) 608명 × 15,570원(단가) × 154시간 × 12개월 × 67% = 11,721

※ 보건복지부,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2년 기준 508명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1년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보유한 만 65세 도래자 1600명(보건복지부)중 보전 대상자가 70명에 불과한 점, 지자체 추가지원 중단 등의 사안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현행 기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서비스 산정 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의 불리함)가 결부되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 중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급여량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돌봄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거나 시설 입소를 강제당하는 상황. 2020년 12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회에서는 '2021년까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645,851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653,963백만원 증

2)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안정화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 15,570원 → 17,000원
- (2)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원 115,000명 → 125,000명
 - 기본급여 대상자 115,000명
 - (신규사업) 만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보전급여 적용) 2,720명 → **당사자의 급여 선택권 보장을 전제로 하여 기본급여 대상자 내 10,000명으로 포함**
- (3)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한 월평균 지원시간 확대, 127시간 → 150시간
- (4)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확대
 - 가산수당 3,000원 → 5,000원
 - 가산수당 평균 시간 확대 151.5시간 → 170시간
- (5) 만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확대
 -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508명 → 2,000명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

○ 요구 예산 : 2,645,851백만원

- 기본급여 산출
: (125,000명 * 17,000원 * 150시간 * 12개월) * 67% = 2,562,750백만원
- 만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 (2,000명 * 17,000원 * 154시간 * 12개월) * 67% = 42,097백만원
-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 (6,000명 * 5,000원 * 170시간 * 12개월) * 67% = 41,004백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시행 : 75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계속	일반	140,786	173,504	180,995	7,491

<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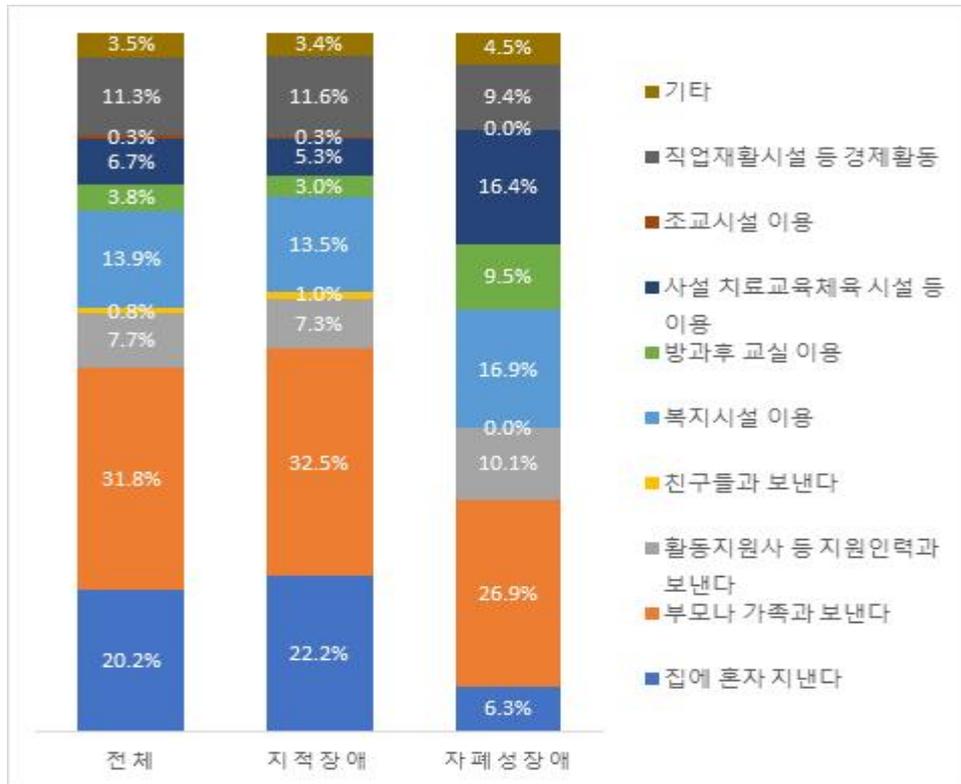
- 사업명 : 발달장애인 지원(주간활동서비스)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 50~80%)

2. 현황 및 필요성

1) 여전히 발달장애인 낮시간 지원 공백 심각(보건복지부, 2022)

- 2022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52%(지적장애 54.7%, 자폐성장애 33.2%)가 평일 낮시간 어떤 복지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낮시간 주된 활동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2)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주간활동서비스

- 우리 사회에 최종증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22년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19년 본사업으로 도입됨.
 -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인력 1인이 발달장애인 2~3인이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주간활동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발달장애인 1인의 시간당 단가가 15,570원으로 그룹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집중지원이 필요해서 추가인력 1인이 지원되며 시간당 단가는 23,355원임.

[표2]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비용 산정

구분	1인 집중지원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5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7,785)	200%	240%

자료: 보건복지부(2022)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1인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지원이 필요하거나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지원과 행동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칭)’ 모형 시범사업을 통한 도입이 시급함.

[표3]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칭) 모형

구분	내용
대상 인원	○ 최종증 발달장애인 10명
지원인력	○ 시설장 1명 ○ 슈퍼바이저(전문인력) 1명 ○ 주간활동서비스 집중서비스 제공인력 10명 (제공인력:발달장애인= 1:1) ○ 행동지원 전문인력 1명 ○ 의료지원 전문인력 1명(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시간당 단가 적용요율을 200%로 하더라도 행동지원 인력 및 의료지원 인력을 모두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지원센터(가칭) 시범사업 시행 시,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의료지원형)와 행동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행동지원형)를 구분할 필요 있음
서비스 단가	○ 시간당 31,140원(적용요율 200%)
시설 기준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제공기관 내 활동공간 및 사무공간 확보 ※ 제공기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등 우선 선정 혹은 지자체에서 공간 제공.
지원 인력 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 슈퍼바이저(전담인력): 서비스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등) ○ 전담 사회복지사(제공인력):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제공 전담 인력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기준 적용. 단, 제공인력의 경우, 활동지원사 경력만 가진 사람은 제외 ○ 행동지원 인력: 행동중재 관련 전문가(특수교사, 작업치료사 등)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행동치료 전문가 기준 적용. ○ 의료지원 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전문가
제공 서비스	○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욕구, 선택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 후 서비스 제공 ○ 행동지원 제공(도전적 행동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 ○ 의료지원 제공(의료지원이 필요한 중복발달장애인) ○ 가족과 협업 - 행동 및 의료 지원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교류 및 필요 시 부모 교육(coaching) ○ 외부 전문가와 협업 -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사 등 전문가와 협업 체계 구축
제공 시간	평일 09:00 ~ 18:00

3. 요구사항

1)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 180,995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7,491백만원 증

2)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1)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시행

- 17개 광역시도당 1개소 설치·운영 예산 증액
- 단가 적용요율 200%

□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시행

○ 요구 예산 : 180,995백만원

• 최종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 시범사업 시행 : 7,491백만원

- 행동지원형: 10명 × 9개소 × 31,140원 × 176시간 × 12개월 × 67% = 3,965백만원

- 의료지원형: 10명 × 8개소 × 31,140원 × 176시간 × 12개월 × 67% = 3,525백만원

※ 지자체별 1개소 설치·운영

※ 서비스 단가 31,140원은 '23년 정부안의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15,570원에 200%의 요율을 적용함.
만일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7,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서비스 단가는 34,000원으로 상승하며,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172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신설)	신규	일반	-	-	17,156	17,156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
(중앙센터 국고 100%, 광역센터 국고 67%, 기초센터 국고 40%)

2.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 가족 지원)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관련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2022년 2월 현재 전국에 약 100개소의 장애인가

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국고 없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기에,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큰 편차가 있기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있어 지역별 불균형이 조성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인되었듯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복지시설 등이 휴관되었을 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처럼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과 개인별 사례관리 등이 필수적임.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17,156백만원 편성

(1) 신규 사업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1개소) 설치·운영
- (2)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역시도(17개소) 설치·운영(국고 지원)
- (3)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시군구(100개소) 설치·운영(국고 지원)

□ 중앙 및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요구 예산 : 17,156백만원

▶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1개소) : 600백만원

- 인건비(7명), 운영비, 연구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회의비 등

▶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역시도(17개) : 4,556백만원

- 17개소 × 400백만원 × 67%(국고보조 비율) = 4,556백만원

▶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 시군구 : 12,000백만원

- 100개소 × 300백만원 × 40%(국고보조 비율) = 12,000백만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 지원 : 27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 (1535-309)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신설)	신규	일반	-	-	2,728	2,728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발달장애인 주체적인 자기 권리옹호를 위한 체계적인 자조단체 운영
 - (근거법령)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 70%)

2. 현황 및 필요성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인 ‘피플퍼스트 (People First)’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국내에서 출범한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참정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한 자기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서 큰 의미가 있는 단체임.

- 발달장애 특성상 당사자가 활동하는 데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떠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에, 자조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장애유형 중 가장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한국피플퍼스트’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요구사항

1)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예산 2,728백만원 편성

- (1) 신규사업

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광역 및 기초단위 발달장애인 자조단체(피플퍼스트센터)운영 지원
- (2)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피플퍼스트대회)운영 지원(연 1회)

□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지원

○ 요구 예산 : 2,728백만원

- ▶ 한국형 발달장애인자조단체 지원 : 2,278백만원
- 17개 시도(각 1개소) × 200백만원(인건비 및 사업비) × 67% = 2,278백만원
- ▶ 발달장애인자조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기관 운영 : 300백만원
- ▶ 발달장애인자조단체대회 운영 지원 : 150백만원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지원주택 '23년 연내 1만호 공급 : 2,278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신규	일반	-	-	227,800	227,8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지원주택 운영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19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공약 '임대주택 확충, 지원주택 매년1만실 확대,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국정과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신규시설 설치 제한 등을 포함하여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21년 국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2. 현황 및 필요성

- 지원주택 :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주거의 소유권을 갖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주거유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거모델. 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유지서비스 제

공기관은 입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거관리부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주택(공급형)** : 서울시는 2016년 지원주택 시범사업 후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 중임. 서울시는 주거약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장애인,노인)과 지원주택 입주대상 신청자격을 동일하게 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국민임대주택을 지원주택으로 활용함.
 - 서울특별시는 현재 9개 운영기관을 통해 주택
 - 입주대상은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으로 입주기간은 기본 계약 2년, 갱신을 통한 최장 20년 입주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은 슈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사례관리 및 직접 서비스),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현황 및 2022 추진계획('21.1.기준)>

서비스제공 기관	소재지	2021 운영현황				2022년 추진계획			
		호수 (호)	입주자 (명)	종사자 (명)	운영비 (백만원)	호수 (호)	입주자 (명)	종사자 (명)	운영비 (백만원)
		158	138	92					
프리웰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46	57	34	1,246				
충현복지관	강동구, 노원구	24	26	15	694				
인강재단	성북구	12	12	8	349				
엔젤스헤이븐	은평구	42	26	20	930				
신아원	송파구	19	3	5	113				
성민복지관	강동구	15	14	10	583	10	10	-	168
우성재단	강동구					10	9	-	222
지에스시	강동구					13	12	-	267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중구					10	9	-	222

출처: 202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계획

- **주거유지서비스** :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비공급형)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서울특별시는 17년 7월부터 1개 권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가형 21호/25명(2020.3월기준)에게 주거서비스를 지원했음. '20년 4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1개 기관 동남권역, 서남권역, 기타권역 주택 36호 39명을 지원하고('21년 12월 기준) 2022년까지 60호(서남,동남권 40호, 동북권 20호) 공급계획을 수정 발표하였음.

< 서울시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공급계획(안)>

구분	'17.7~'20.3 (시범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주택수 체험형 + 자가형	26호	40호	80호	120호
권역	강남, 양천구	2개 권역 (동남권, 서남권)	3개 권역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4개 권역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비스 제공기관	1개 기관	1개 기관	2개 기관	3개 기관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내용>

유형	주요내용
필수 서비스	주택관련 : 주택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생활지원 : 가사 유지 및 관리, 식사관리, 외모관리, 금전관리, 시간관리, 의사소통지원, 이동지원 관계지원 : 심리상담, 동아리 및 모임 연계 안전지원 : 안전 및 긴급상황 대응, 권리와 책무 이해, 인권침해 대응, 건강관리, 24시간 긴급대응 지원 등
선택 서비스	친구, 집안관리, 가정 내 지원, 개인응급시스템지원(전자통신 시스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일상생활기술, 사교기술 등)

○ 중앙정부는 지원주택을 적극 도입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주거권을 적극 보장해야 함

3. 요구사항

1) 2023년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예산 227,800백만원 편성

(1) 신규 사업

2) 예산요구 주요근거

(1) 지원주택 '23년 연내 1만호 공급

□ 지원주택 '23년 연내 1만호 공급

○ 요구 예산 : 227,800백만원

▶ 3,400만원 × 10,000명 × 67% = 227,800백만원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1인당 지원단가 3,4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 : 143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542-300)	계속	특별 (균특)	2,154	4,834	19,124	14,29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사업기간 : '20 ~ 계속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지원금, 주거, 주거유지서비스, 자립생활 경험 등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하기 위함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신규시설 설치 제한 등을 포함하여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21년 국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 2022. 9. 9.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사업수행방식) 국고보조율(50-100%)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내역에서 '23년부터 균특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이관 및 '탈시설' 용어 삭제

2. 현황 및 필요성

1) 2022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 인권적 모델에 근거한 로드맵 보완

-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

○ 시설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및 시설화 금지

- 자타해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
-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긴급상황을 포함한 UN 탈시설가이드라인(2022) 기반 탈시설이행강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강화
- 비상시에 장애인 탈시설 방안을 채택하고 지역사회 거주 지원
- 폭력 및 학대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진정 절차 등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

	전장연 정책요구안 ('31년 종료 및 대상확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및 신규입소 금지(단기·공동생활가정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제공기관 시설폐지 및 서비스제공기관 위탁 - 지역사회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장애인 탈시설지원 프로세스 마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자립지원조사 - 단기·공동생활가정포함 장애인 약3만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 2년 단위 지원대상 확대: 총 22,500명 (1,500명→3,000명→4,500명→6,000명→7,500명) - 지역사회 장애인 시설입소예방 및 자립지원 - 노숙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장애인 자립지원조사 확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주택 및 당사자 계약권 - 주거환경개선비 및 IoT설치 관리비
활동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240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보
초기정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정착금 (1인 2천만원) - 자립지원조사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행 - 주거유지지원인력 2:1 배치(장애특성 및 야간응급 인력 반영) - 건강검진 및 후속치료관리비 - 교육, 노동, 낫활동 지원기관 및 주거유지서비스 확충

2)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함.

- 자립주택은 현재 14개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
- 활동지원 추가시간 보장 : 장애 및 소득기준 상관없이 활동지원시간 보장 필요
- 자립정착금 : 현재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에게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탈시설 정착금 지원
- 지역별 전달체계 구축 및 탈시설장애인 지원인력 확충

3) 시범사업 탈시설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전달체계마련 예산 구축 필요

- 윤석열정부는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의 명칭에서 ‘탈시설’용어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별도 구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예산 계획 여부 불분명

○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역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지원 확대 추진

[2년차 : 추진기] 2023년

- ▶ 1년차 선정대상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지속
- ▶ 본사업 대비 자립지원 이용자 수요 파악
- ▶ 서비스 추가발굴과 지원모형 체계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536-302)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회계구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 예산		629,008백만원(+15,602백만원)	4,834백만원(+2,680)
연도별	'24	715,786백만원	10,439백만원
투자	'25	737,260백만원	21,980백만원
계획	'26	759,378백만원	36,309백만원
코로나19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없음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국고지원 대상 확대 추진	해당없음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19,124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14,290백만원 증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명칭 복구
-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월 240시간 추가지원 : 월 80시간 → 월 240시간
- (3) 자립정착금 도입 : 1인당 0원 → 1인당 2,000만원
- (4) 주거유지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강화
: 20개 기관, 지원인력 100명 → 20개 기관, 지원인력 280명
※기관당 자립지원사 10명, 기관당 간접지원인력(총괄 1명, 사무 1명, 간호 1명, 치료 1명)
- (5)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치료·상담지원비 확대
- (6) 보조기기 및 IoT 지원비 확대
- (7) 시범사업 제도개선 연구 추가
- (8) (*별도항목)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주택공급계획 및 주택물량 확보

□ 탈시설 로드맵 이행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 요구 예산 : 19,124백만원 (증 14,290백만원)

▶ 탈시설 장애인 240시간 활동지원서비스

- (17,000원 × 200명 × 240시간 × 12개월 × 50%)+(17,000원 × 200명 × 240시간 × 6개월 × 50%)=7,344백만원

▶ 자립정착금 : 20백만원 × 400명 × 50% = 4,000백만원

▶ 주거유지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자립지원사 100명/기관당 총괄1,사무1,간호1,치료1*20개기관)

-운영비(2,400,000원×10개기관×1년×50%)+(2,400,000원×10개기관×0.5년×50%)=18백만원

-인건비(4,027,800원×140명×12개월×50%)+(4,027,800원×140명×6개월×50%)=5,075백만원

▶ 건강검진 및 치료·상담지원비

- 400명×400천원×50%=80백만원

- 치과치료비(추가) 400명×2,000천원×50%=400백만원

- 심리행동지원비(추가) 160명×5,000천원×50%=400백만원

▶ 주거환경개선비 : 200명×6,000천원×50%=600백만원

▶ 보조기기 및 IoT지원비

- 200명×3,000천원×50%=300백만원

- IoT보급 및 유지(추가) (기기보급 12,500,000원×20개소×100%)+(유지비 80,000원×10개소×100%)+(유지비 80,000×10개소×6개월×50%)=257백만원

▶ 시범사업운영비

- 연구용역 및 일반수용비, 제도개선연구 용역(증액) 650백만원

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지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 41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본예산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중증장애인지립생활 지원(1542-300) 중증 장애인지립생활센터 지원	계속	일반	4,756	4,852	9,000	4,148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지원
- 사업기간 : '05 ~ 계속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 지원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인동료간상담)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국비 40%, 지방 60%)

2.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대 초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장애인지립생활센터는 2022년 현재 전국 260개 이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 장애인지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운동을 추동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고, 중증장애인들의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생활 교육, 동료상담 등의 역할부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 전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중앙정부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과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온 역사성 또한 지니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금액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18년 동안 약 6,000만원(국비)으로 사실상 동결 상태임. 매해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또한 정부는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표방하며, 2022년까지 국비 지원 센터의 개소수를 90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 75개소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음.

[참조]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중 일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18년 62개소 → ’22년 90개소)

* ’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52개소 중 62개소에만 국비 지원

[표] 연도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연도	지원현황
2017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2개소(개소당 150백만원)
2018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2개소(개소당 153백만원)
2019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1개소(개소당 155백만원)
202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5개소(개소당 155.5백만원)
2021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5개소(개소당 156.7백만원)
2022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5개소(개소당 158.3백만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청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적 환경으로 인해 유사기관 간 연계 등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의 활성화와 당사자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감소, 향후 정부 탈시설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중 국비 지원 센터의 개소수 확대와 사업비 증액이 시급함.

3. 요구사항

1) 2023년 중증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9,000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4,148백만원 증액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요구 주요근거

(1)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개소수 확대 이행 : 75개소 → 90개소

(2) 개소당 사업비 확대 : 1.62억 원 → 2.5억 원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요구 예산 : 9,000백만원(증 4,148백만원)

- 산출근거 : 250백만원(사업비) × 90개소(17개 시·도) × 40% = 9,000백만원

뇌병변 장애인 지원

뇌병변 장애인 지원 : 40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뇌병변 장애인 지원	신규	일반	-	-	4,000	4,000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뇌병변장애인지원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기준 뇌병변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수 유형별 3위, 약 25만여명으로 과반 이상이 중증, 고령화. 2014년 이후 유형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2019, 장애통계연보). 또한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중도 뇌병변장애인 등록 현황은 약 23만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의 9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19, 장애통계연보). 발병 후부터 3년 안에 치료, 재활, 사회적응, 지역서비스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장애등록 이후 사회적 고충 상담, 서비스 연계·의뢰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뇌병변장애인의 지속통증, 척추-경추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제공 및 인프라가 없음.(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3지역, 뇌병변장애인복지관 1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곳 정도)

- 평생치료와 제2의 장애가 출현하는 장애유형인만큼 긴급을 요하는 대상 25만명에 대한 치료 유지, 통증관리, 수술,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의사소통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른 치료정보, 통증관리, 수술지원 등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모든 건강검진에서 뇌병변장애인은 낮은 수검률을 보였으며 타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수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비싼 의료비, 재활병원 부족, 특진비, 재활분야 전문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뇌병변장애 유형 의료기관 및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원되어야 함.

○ 2014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발달장애 대상에서 뇌병변장애인은 제외되어 많은 뇌병변장애인들이 제도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2015년 12월 뇌병변장애인실태조사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전국 거점별 뇌병변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 수립은 매년 반영되지 않음. 주요 정책 요구는 의료와 재활치료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었음.

- 선천성의 뇌성마비장애인은 수반장애, 일상생활, 신체·건강, 활동과 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후천성의 뇌졸중, 뇌손상 등의 경우 회복시기 및 치료여부에 따라 이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 심리적·법률적·경제적 각 영역에서의 필요도와 각 기제나 원인이 다르고 욕구 또한 각 영역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2015,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연구).

○ 현재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의 연령제한이 있음. 또한 물리치료를 받는 17세 이하는 17.8%, 18세~44세 이하는 10.1%, 45세~64세 이하는 17.7%, 65세 이상은 31.6%로 18세~44세의 이용률이 가장 저조함(2017, 장애통계연보). 성인의 경우에도 인지, 의사소통, 감각, 운동 등 중복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가지며 약 1만여명 이상은 지속적인 통증과 척추-경추디스크, 근골격계 질환, 치아 및 섭식장애로 인해 내부질환 유발로 건강권의 전반적인 위협에 노출됨.

■ 사례 1 : 부산에 사는 41세 김00씨는 6개월 전부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 지역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판정하여 신경안정제와 경직형 약을 처방 받아 4시간 약효에 의존하고 있을 뿐임. 대학원을 졸업,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만 만성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 사례 2: 서울에 사는 43살 2자녀를 둔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박00씨는 강직형 신체로 인해 18년 전부터, 별다른 치료 및 지원 없이, 신경안정제 유형의 약 처방으로 오랫동안 약물복용으로 시달리고 있음. 약보다 술이 더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면서, 이제는 알콜릭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

- 타 장애유형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 현황은 뇌병변장애를 제외한 중증장애인 ▶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척수장애 등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유형별 집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예) 척수장애인에게 재활정보제공, 심리재활지원, 사회재활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상담실 운영, 심리상담가 파견, 장애예방강사 파견 등 척수장애인의 사회적응 지원 등. 일상적인 재활서비스(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재활치료 등)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장애특성으로 인한 2차 장애 출현 등이 발생하여 성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 2019년 9월 서울시 뇌병변장애인마스터플랜 발표 및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진행
 - 2021년 2월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및 뇌병변장애인실태조사연구 중(22년9월 현재)

3. 요구사항

1) 2023년 뇌병변 장애인 지원 예산 4,000백만원 편성

(1) 신규 사업

2) 뇌병변 장애인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뇌병변장애인종합(재활훈련)지원센터

▲ 요구 예산 : 1,500백만원

- 500백만원 × 3개소

· 인건비(5명), 운영비, 정보제공 연구비, 교육 지원프로그램,네트워크 개발 등

■ 뇌병변장애인 통증관리 및 수술비 긴급지원

▲ 요구 예산 : 2,500백만원

- 통증관리 1.5백만원 × 1,000명

- 긴급지원 10백만원 × 100명

뇌병변장애인(중증중복) 의사소통지원

뇌병변(중증중복)장애인 의사소통지원(기기·중재·서비스) : 16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신규	일반	-	-	1,620	1,62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뇌병변(중증중복)장애인 의사소통지원(기기·중재·서비스)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증진을 위한 장애특성에 맞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 마련 및 사회참여를 위한 의사소통환경구축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사소통지원)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 (서울시·부산시·제주도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책무, 규칙 등을 담음
 - (UN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정의), 제9조 (접근성),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24조 (교육)
 -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목표3 -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에 대한 활동영역 구축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4. 권익증진·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 - 이동, 의사소통 등 생활 속 불편함 해소로 보통의 삶 실현 지원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의사소통지원 강화

2. 현황 및 필요성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의 중복. 주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등록 뇌병변장애인 중 중복언어장애인은 약 50% 차지(2015, 고용개발원통계)
 - 뇌병변장애인 등록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중증의 장애인(1급~3급)은 과반수이상으로 집계됨(2019, 장애통계연보). 장애등급 하락 등을 걱정하여 유형분리 이후 재판정을 받지 않은 당사자들의 수까지 합친다면 이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됨
-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의 기반구축이 제한적임
 - 뇌병변장애인의 주된 차별의 원인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차별이 교육, 노동, 사회참여 등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음(2019,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연구) 신체적 장애특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주변과의 단절 및 학대,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됨
- 뇌병변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포괄적인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지원체계’가 종합정책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뇌병변장애인은 18세 이하 학령기로 언어재활 및 치료에 국한되어 있으며 농아인은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의사소통지원, 시각장애인은 점자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은 지원 법령아래 의사소통에 관한 지원이 분절적·편향적임
 - ‘장애인의사소통 지원을 당연한 권리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1.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의사소통의 도움이 필요 정도에 대해 40.8%가 필요하다고 호소(2015,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연구)
- 뇌병변장애인 40% 이상이 발음의 명료도가 낮거나 구강 안면 근육의 제한된 움직임으로 구강 조음이 어려움 등 의사소통 어려움이 나타남.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뇌병변장애인은 구어의 제한성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 가장 유명한 사례로 고 스티븐호킹 박사가 생전에 연구발표 및 강연 등에서 사용하였던 것이 안구마우스를 기본 장착한 하이테크 기반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의 대표 사례임. 스티븐호킹 박사가 사용하였던 보완대체의사소통(AAC)는 당시 가격으로도 이미 1,000만원을 호가하였음
-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서원선 외, 2020)에 따르면 국내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주요 의사소통 방법으로 80% 이상이 말(구어)를 선택하였음. 일반적인 음성언어 사용이 68%, 의사소통 조력인의 사용이 20%로 나타나 뇌병변장애인의 주요 의사소통 방법은 음성언어에 치중되고 있었음. 이는 뇌병변장애인이 말로 소통이 수월하기 때문이기 보다는 명료도가 불분명하고 제한이 있더라도 음성언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김경양(2021)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주요 의사소통 방법으로 음성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국내에서 뇌병변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의 제한점이 많기 때문임. 현재까지 국내에서 뇌병변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의 대부분은 안구마우스 부재, 음색 제한, 소리출력 제한, 스캐닝 기능 부재, 제한된 개수의 그림 상징 기반의 단순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하이테크 기반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가 전무한 상황임
- 설령 뇌병변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상생활 내에서 사용하기에 필요한 거치대, 휠체어 장착을 위한 지지대, 음성 확대기, 지속적 사용을 위한 밧데리, 키가드, 블루투스 스위치 등의 기반 여건이 현저히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까닭에 국내에서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사용의 실사용자로 가장 많은 사용자가 확보되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수가 현저히 부족함.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등 대다수 국외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의 주요 지원 대상자는 뇌병변장애인임. 특히 이들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구마우스를 장착한 하이테크 기기에 포함되어 개인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고가의 제품으로 지원되고 있음. 예를들어, 현재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150만원 이상 1500만원까지의 지원 비용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하이테크 보조기기 비용으로 품목당 약 1,500만원 이상에 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https://ourguidelines.ndis.gov.au/supports-you-can-access-menu/equipment-and-technology/assistive-technology/how-do-we-fund-assistive-technology>)
- 이와 같이 하이테크 기반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가 뇌병변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와 같은 인력 지원은 향후 인건비 증가로 인해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이미 국외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음. 사람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사람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하이테크 기반의 기기의 적용이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히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의 지원임. 둘째,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하이테크 기반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내에서도 하이테크 기반 사업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현재 다양한 보조기기 민간 업체 및 국내외 연구개발 및 기술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국외의 하이테크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유입 및 시장 저변 확대를 확보할 수 있음. 셋째, 이미 전 세계는 기술과 공학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공학의 발달은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개선 및 보편적 접근성 확대에 기초가 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하이테크 기반의 서비스 강화 정책이 전무한 상황임. 발달장애인과 차이점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 기술을 발달 및 이에 따른 기기의 사용은 매우 중요한 필수지원임. 이미 국외에서는 눈동자로 컴퓨터 및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Eyetracking)이 탑재된 기기, 웨어러블(몸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가 적용된 기기, 뇌파를 적용하는 기기 등으로 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확대와 실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국외에 비하여 다소 늦은 상황이나, 더 늦기 전에 국가 공학 기술의 발달을 도모하여 이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선순환 구조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함

3. 요구사항

1) 2023년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예산 1,620백만원 편성

(1) 신규 사업

2)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신규 설치(경상북도, 경기도, 부산)

‘시도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

▲ 요구 예산 : 900백만원

- 300백만원 × 3개소

■ 사회참여를 위한 의사소통환경구축

‘하티텍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의사소통방법 및 도구활용) 대상자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98호)

▲ 요구 예산 : 420백만원

-1대당(7백만원) × 30명 × 2곳(경상북도, 경기도)

■ 하이테크 보조기기 비용(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 요구 예산 : 300백만원

- 하이텍 기반 보조기기 (품목당 약 10백만원)×30명=300백만원(경상북도, 경기도)

※ 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사용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발굴하여 시범적용 진행. 탈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중증중복의 제한성이 있는 장애인을 주요

대상자로 선정

- ※ 서울시장애인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및 보조기기센터 역할 구분 및 협업을 통해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서장통은 사례 발굴, 평가, 직접 중재서비스 역할. 보조기기센터는 평가, 직접 보급, 대여 및 임대, 기타 보조기기 보급 등 역할 강화
- ※ 하이테크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의 다양성 확보 및 확대를 위한 국외 제품 도입 및 국내 제품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 센터 설립 및 품목·급여 확대 : 64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보조기기지원 (1532-304)	계속	일반	4,660	4,885	11,285	6,4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사업기간 : 계속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장애유형·장애특성에 맞는 개인맞춤형 보조기기지원서비스 제공
 - (근거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8호)

2. 현황 및 필요성

- 건강의료보험 급여기준 품목과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분리해야함.
 - 등급제개편 이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체계가 다양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사진단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리됨. 장애인이 보조기기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의사진단, 병원내방이 필요하며 지원근거를 보험 적용에 한해서 하다 보니 장애인당사자 필요에 따라 주변 보조기기 장착이 필요함에도 구입, 설치, 변경 등 모든 조항이 불법 처리되는 문제가 있으며 신청할 때도 병원, 이후 서비스나 사고보험 등 모든 것이 건강의료보험 기준에 맞춰져 있음.
-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부처별·기관별로 구분되고, 전달체계 또한 분절적.
 - 현재 국내에는 노인, 장애인, 산재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8개의 보

조기기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각각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부처별.기관별로 구분되고, 전달체계 또한 분절적임(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 보조기기 지원사업>

담당부처	사업명	운영기관	대상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중앙/지역 보조기기센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역 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24세 이하 지체, 뇌병변)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근로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사업주 및 근로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국가유공자

-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개인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변할 때 보조기지지원사업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아야 함.

○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절차에서의 문제

- 보조기기는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다양한 사회적 영역)신청, 상담과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의 습득, 사용 과정에서 유지.보수 지원하는 과정과 공급측면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 지원서비스에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중요함.
- 실제로 장애인, 전 생애주기별 보조기기가 필요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매우 높았는데, 소지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비율도 23% 정도로 나타남.

<보조기기 필요.소지.사용 현황>

구분	비고령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	고령장애인 (65세 이전 장애 발생)	장애노인 (65세 이후 장애 발생)	전체
보조기기 필요율	39.93	67.57	85.48	55.75
보조기기 소지율	34.48	61.09	81.62	50.24
보조기기 사용률	29.75	54.73	74.72	44.66
보조기기 미소지율	47.69	47.38	51.43	48.50
보조기기 미사용률	20.03	22.77	27.36	22.97

<자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 원자료 분석>

- 1) 보조기기 필요율: 한 개 품목 이상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2) 보조기기 소지율: 한 개 품목 이상의 보조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3) 보조기기 사용률: 한 개 품목 이상의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4) 보조기기 미소지율: 필요한 보조기기 중 한 개 이상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5) 보조기기 미사용률: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 중 한 개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문제는 보조기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해당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적합하지 않아서’와 ‘소지 이후 신체 변화’를 꼽았으며, 보조기기 선택의 문제와 이후의 지속적인 점검이 부재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장애인의 보조기기 미사용 사유>

구분	비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적합하지 않아서	35.17	45.67	47.00	42.73
사용 환경 맞지 않아서	14.51	17.78	17.43	16.63
소지 이후 신체 변화	45.42	31.51	28.76	35.10
고장 이후 미수리	3.06	1.42	4.48	2.89
조작.사용법 몰라서	0.86	0.53	0.26	0.55
기타	0.97	3.09	2.07	2.1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 원자료 분석>

주: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 중 한 개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대상

- 10년 이상 보조기기급여액, 품목, 신청 시 대상자 선정이 등급제폐지 이전 그대로.
 -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불만으로는 ‘내구성이 약해서’가 가장 높았고, ‘가격이 비싸서’,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이 별로라서’도 높은 비율로 응답되어, 보조기기 품목 자체에 대한 불만과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불만족 사유>

구분	비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조작이 어려워서	7.88	7.31	7.46	7.57
내구성이 약해서	37.80	59.00	51.12	48.76
가격이 비싸서	20.13	10.71	18.80	16.55
크기, 무게, 색상, 디자인이 별로라서	20.73	14.15	7.89	14.89
기타	13.46	8.83	14.73	12.2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7) 원자료 분석>

주: 한 개 품목 이상의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의 필요성

- 예) 최종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신청-중증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 중 개별 장애특성에 맞춘 전동휠체어가 없음, 기존 등록업체 제품만 신청하다보니 개별 몸에 맞는 주변기기 설치나 기능 및 기기변경 등 적용금액보다 개인이 자신에 맞는 형태로 변경하기위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함.(①컨트롤기: 손, 손가락, 아이게이지, 발, 톱마우스 등 ②자세유지: 회전의자, 자세 수평, 전신 사지마비 자세유지 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3. 요구사항

1) 2023년 보조기기 센터 설립 및 품목·급여 확대 예산 11,285백만원 편성

- (1) 2023 정부안 대비 6,400백만원 증

2) 보조기기 센터 설립 및 품목·급여 확대 예산요구 주요근거

- 현 보조기기센터 부재 지역 보조기기센터 설립
 - ▲ 요구 예산 : 3,000백만원
 - 500백만원 × 6개소
 - 현 보조기기센터 미설치지역(강원, 경북, 충남, 전남, 울산, 세종에 센터 설립
(※전국 보조기기센터 현황 : 중앙, 경기, 인천, 충북, 대전, 대구, 전북, 광주, 경남, 부산, 제주)
- 보조기기 급여확대 및 개별지원예산 확대
 - ▲ 요구 예산 : 3,400백만원
 - 200백만원 × 17개소(기존 및 신규 보조기기센터)

저상버스 도입보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이행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 1,610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932-301)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속	일반	98,565	181,519	343,353	161,834

< 사업 개요 >

- 사업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저상버스 도입보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2. 현황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17~'21)>에서 저상버스 보급률 추세를 고려하여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전국 42%로 정하고, 지역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달리 정하여 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설정함. 그러나 서울시 4,412대(부족분 395대), 광역시 2,755대(부족분 1,509대), 9개도 3,661대(부족분 2,249대)임

<저상버스 도입률>

구분	저상버스 도입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합계	35,335	10,828	30.6	
8개 특별·광역시	서울특별시	7,395	4,412	59.7
	부산광역시	2,517	728	28.9
	대구광역시	1,623	608	37.5
	인천광역시	2,204	580	26.3
	광주광역시	999	297	29.7
	대전광역시	1,015	339	33.4
	울산광역시	848	103	12.1
	세종특별자치시	268	100	37.3
9개도	경기도	11,007	2,112	19.2
	강원도	511	203	39.7
	충청북도	637	137	21.5
	충청남도	902	89	9.9
	전라북도	818	187	22.9
	전라남도	737	124	16.8
	경상북도	1,285	222	17.3
	경상남도	1,739	439	25.2
	제주특별자치도	830	148	17.8

참조: 202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개정안(대표발의 천준호)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선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통계편람의 연식별 차량현황에 따르면 차량 교체가 의무화되는 연식의 차량(9+2년)은 농어촌버스까지 포함 7,613대임.

3. 요구사항

1) 2023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 343,353백만원 편성

- (1) 2023 정부안 대비 161,834백만원 증액

2)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744대 확대
- (2) 그 외 시·도 저상버스 도입 총 6,869대 확대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 목표치 달성 위한 저상버스 도입**

○ **요구 예산 : 343,353백만원**

▶ 서울시 도입 수요 : 27,379.2백만원

- 92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보조율 40%×744대

• **저상버스(서울시) 도입 확대 : 744대**

▶ 그 외 시·도 도입 수요 : 315,974백만원

- 92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보조율 50%×6,869대 = 315,974백만원

• **저상버스(그외 시·도) 도입 확대 : 6,869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법정대수 충족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46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932-301)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지속	일반	9,361	10,102	14,798	4,696

< 사업 개요 >

- 사업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2. 현황 및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수(법정대수) 이상으로 운영해야 함. 법정대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왔으며 이에 운행대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제·개정일	내용
2006.1.26. 제정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80대 2.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50대 3.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2010.6.30.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2019.7.5.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2021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보급률(운행대수÷법정대수×100)은 86.0%, 법정대수를 크게 미달. 현재 부족 차량 전국 664대임.

- 또한 사업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중앙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별 도입률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 보급률이 특히 낮은 지역은 부산 64.6%, 충북 64.4% 등으로 나타났으며, 169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12곳에서 법정대수를 달성하지 못함

<전국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법정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전국	4,738	4,074	86.0
서울특별시	725	622	85.8
부산광역시	319	206	64.6
대구광역시	216	163	75.5
인천광역시	254	169	66.5
광주광역시	128	116	90.6
대전광역시	134	96	71.6
울산광역시	90	76	84.4
세종특별자치시	22	21	95.5
경기도	1,027	1,157	112.7
강원도	195	149	76.4
충청북도	180	116	64.4
충청남도	236	163	69.1
전라북도	236	192	81.4
전라남도	247	179	72.5
경상북도	317	214	67.5
경상남도	344	369	107.3
제주특별자치도	68	66	97.1

참조: 2021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국토교통부는 매년 400대 가량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 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대폐차가 진행.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대수가 순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다 확대편성해야 함. 가령, 서울시의 경우 2022년에 124대의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편성되었으나 신규 구입은 30대에 불과. 이외 차량은 모두 대폐차 구매임.

3. 요구사항

1) 2023년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 14,798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4,696백만원 증

2)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서울시 특별교통수단 103대 확대
- (2) 그 외 시·도 특별교통수단 총 561대 확대
- (3) 대폐차 규모 확인 후 대응 예산 추가 편성 ·법정보장대수 100% 충족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추가 도입

○ 요구 예산 : 14,798백만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4,074대 → 4,738대 (증 664대)

▶ 서울시 도입 수요 : 1,895.2백만원

- 46백만원(특별교통수단 보조액) × 보조율 40% × 103대
• 특별교통수단(서울시) 도입 확대

▶ 그 외 시·도 도입수요 : 12,903백만원

- 46백만원(특별교통수단 보조액) × 보조율 50% × 561대
• 특별교통수단(그외 시·도) 도입 확대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시 차년도 대폐차 규모 파악 및 2023년도 추경예산반영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목적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 25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932-301) 교통약자장거리이 동지원	지속	일반	500	500	3,050	2,55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 사업기간 : '19년~'20년 시범사업, '21년 이후 본사업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

2. 현황 및 필요성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기차로 이동하는 경우 도서 산간지역 혹은 기차 노선이 없는 곳은 아예 갈 수가 없으며, 고속 및 시외버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
- 장애계의 오랜 요구 끝에 2019년 10월부터 4개 노선(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이는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현재 서울↔당진 노선의 2대 차량만 운행.
- 장애인의 완전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를 확대 도입해야 함. 2023년에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 중 12% 수준인 20개 노선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 개조 비용 및 시설 개선 비용 예산 증액을 요구

3. 요구사항

1) 2023년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 3,050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2,550백만원 증

2)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 (2) 터미널 시설 개선
- (3)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 관리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을 위한 차량 개조 및 시설 개선

○ 요구 예산 : 3,050백만원

-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 2,000백만원
 - 50백만원(개조비용) × 20개 노선 × 2대
 - 고속·시외버스 차량 개조 확대
- ▶ 터미널 시설 개선 : 1,000백만원
 - 50백만원(승강장·내부시설 개선) × 20곳
 - 터미널 시설 개선 확대
- ▶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 관리 : 50백만원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통한 지역차별 철폐 : 1,437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4932-301) 특별교통수단도입 보조(운영비)	신규	일반	-	23,750	167,500	143,75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운영비)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 현황 및 필요성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부담해왔음. 이로 인해 법정보장대수 확보와 별개로 이용방법, 이용시간, 운행범위를 비롯하여 시간대별 차량운전원 고용이 상이하여 지역 간 편차 발생.
- 특히 법정보장대수가 확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전 차량이 동시간대에 운행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며, 평균 대기시간이 30분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충노력도 미미함.
- 차량운전원의 수는 시간대별 운행되는 차량의 대수와 대기시간과 직결됨에 따라 즉시콜(예약없이 장애인콜택시 신청), 광역이동 운영에 영향을 주며 운전원을 야간 시간에 미 고용시에는 24시간 운행이 불가함. 이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대표발의 천준호)이 개정되어 국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내년 7월부터 즉시콜, 광역이동, 24시 운

행을 전제로 차량운전원 수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강구되어야 함.

3. 요구사항

1) 2023년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예산 167,500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143,750백만원 증

2) 교통약자 통합이동지원센터 예산 주요근거

(1) 8시간 근무 차량운전원 2인 고용(휴무시간 포함)

(2)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예산: 지역 간 이용차별 철폐를 위한 운영비

요구 예산 : 167,500백만원

▶ 8시간 근무 차량운전원 2인의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지원: 167,500백만원

- 100백만원(차량운전원 인건비, 유지비, 유류비) × 5,000대 × 보조율 67% × 50%(6개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주거 공급 : 16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주거급여지원 (1034-302)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	일반	1,710	2,850	4,500	1,65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05년 ~ '15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시행)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자가임차 주택 내 이동·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 (사업수행방식) 국고보조율(50%)

2. 현황 및 필요성

1)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택법」 제5조의2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노후화된 주택 및 주거취약 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가구 중 주택건축연도가 20년을 초과하는 비율은 49.1%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이중 30년을 초과하는 비율은 25.5%로 장애인가구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특히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6%로 되거시 원상복구 부담이 있는 민간임대 임차가 가장 많고 자가(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인 경우라도 비아파트가 많음(국토교통부, 2015). 또한 주거취약지역 및 비거주용건물(29,946명, 2017년 기준), 주택이외 거처(2,515명, 2017년 기준) 등 자가형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함.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신청자가 지원규모 보다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 자가소유 또는 장기간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 주택상태 및 장애를 고려한 주택개조 지원 : 장애인의 주택의 상태(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재난·재해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는 일반가구에 비해 양호도가 낮으나 주택개조를 원하는 장애인 중 주택개조 사업을 이용한 경험은 전체 장애인의 0.3%에 불과함(국토교통부,2015). 집구조의 개조를 원하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25%, 지체장애(13.7%)로 가장 많고, 주택 개조사항으로 여전히 문턱 낮추기 (29.3%)가 높은 한편, 기타(15%)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높음. 따라서 장애특성 및 주택의 상태를 고려한 주택개조와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함(장애인실태조사,2017).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 지원대상 :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가구
- 지원내용 : 휠체어 등 동선을 파악해 보행보조기기 사용, 좌식 및 외상생활, 보조인 동반 보행 및 단독보행 등을 분류하여 이동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주택 접근로와 현관 바닥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차양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 예산 4,500백만원 편성

- (1) 2023년도 정부예산안 대비 1,650백만원 증

2) 장애인주택 개조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기준 개선
- (2) 장애특성 및 주택상태를 고려한 호당 사업비(기존 3,800만원, 1500호) 집행액 상향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기준 개선 및 호당 사업비 상향

○ 요구 예산 : 4,500백만원

-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중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 6백만원 × 1500호 × 50% = 4,500백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중증장애인 주거권 마련을 위한 전세주택 제공 : 510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신규	일반	-	-	51,000	51,0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상지원
 - (근거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전세주택 제공사업 도입, 최저주거기준 마련,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등을 권고함.

2. 현황 및 필요성

1) 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택법」 제5조의2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주거비부담 : 장애인가구 중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인의 주거 점유형태는 '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p, 1.8%p 감소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p 증가함. 장애

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지하·반지하·옥탑방 및 쪽방에 거주하는 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나 최근 반지하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우려됨(국토교통부,2015).

< 3인 이상 단칸방, 지하·반지하·옥탑방 및 쪽방 거주가구 비율 >

(단위 : %)

구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	쪽방 거주비율
일반가구	(2014)	0.3	2.8	0.3
장애인가구	(2009)	0.5	4.0	-
	(2015)	0.1	3.5	0.6

주 : 2009년은 쪽방 거주가구 비율을 조사하지 않음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및 미성년중증장애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전세주택 보증금(2인 가구 기준 최대 1억 7천만원, 2022년 기준)을 무상으로 최장 6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주택 대상 기준 조건 등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어려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공공임대만으로는 풀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주거 문제 해소 필요

3. 요구사항

1) 2022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예산 51,000백만원 편성

(1) 신규사업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예산요구 주요근거

(1) 17개시·도별 30가구 대상 2억 상당의 전세주택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요구 예산 : 51,000백만원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200백만원 × 17개시·도 × 30가구 × 50%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134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신규	일반	-	-	13,487	13,487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3 ~ 계속, 신규
- 시행주체 : 교육부, 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안정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질 높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 욕구 향상에 기여함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 70%)

2.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에 따른 운영비 지원)

- 22년 7월부터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을 적용
- 이에 따른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과 지역별 편차에 따른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이 지역별 편차로 인해 지속적이고 구족으로 침해되어온 상황
- 7월부터 적용될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매뉴얼 적용에 따른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시범사업 필요.

○ (차별해소) 일반 평생교육 환경에 비해 장애인평생교육은 매우 열악하여

차별적인 상황에 처해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 개선 시급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9%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0.0%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전체의 7.2%)에 불과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평균 212,330개)의 0.3%에 불과.

○ (지역간 격차 해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각기 다르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발생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근거로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시·도별 지원액 상이
- 매년 지역별 시설에 대한 지원액 편차*는 더욱 벌어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예산편차: ('20) 시설별 6백만원~580백만원 → ('21) 시설별 0원~635백만원

○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개선 목적의 시범 사업 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③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비 지원 필요
- 교육부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2021.6.30.)의 '22년 7월 적용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교육부가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 되도록 국비 지원 및 추경 예산 확보 필요

- 교육부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교육과 평생교육에 직접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므로(하단 표 참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가능함.

■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학생지원국]				
장애인 교육지원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모)	2,297백만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민간경상보조, 비공모)	1,500백만원	대학 (장애 학생 지원 체계 우수 대학)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 (민간경상보조, 공모)	400백만원	대학
평생학습 기반구축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모)	420백만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기관
		검정고시 제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모)	350백만원	검정고시지원센터
학생건강지원	학생건강지원강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공모)	1,215백만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소계	6,182백만원	
[국립특수교육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공모)	1,500백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계	1,500백만원	

3. 요구사항

1) 2023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 13,487백만원 편성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13,487백만원 신규 편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산출내역>

○ 요구 예산 : 13,487백만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 13,487백만원

- 330백만원(1개 시설 연간 운영비) × 61개소 × 67%(국고보조율)

• 1인당 교육비 7백만원 (7,199,947원을 7백만원으로 환산) × 30명

- 사무운영비 120백만원 (상근인력 2명, 운영비, 임대료 등)

√ 세부 : 장애성인 학습자 1인당 평생교육 경비 7,199,947원의 추정 근거 (

항목	금액
프로그램비	1,915,835
교과활동경비(교재구입비, 자료제작비, 학습준비물비)	617,657
특별활동경비(학급활동비, 현장체험활동비, 실험실습비)	877,492
관련서비스 경비(급식비, 통학비, 보조인력 경비 등)	3,788,963
합계	7,199,947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536-302)의 경우, 과거 지방이양사업이었으나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201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개정
 - 보조금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지역평생교육운영센터 운영’을 삭제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신설하고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반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신규대조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제4조제1항 단서 관련)

기 존 사 업	개 정 안 사 업
<생략>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생략>	<생략> 7. 삭제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신규대조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기존		개정안	
사업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1. ~ 117. (생략)	(생략)	(좌동)	(좌동)
118. (삭제)		<u>118.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운영</u>	<u>서울: 50</u> <u>지방: 70</u>
119. ~ 122. (생략)	(생략)	(좌동)	(좌동)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속가능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 47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운영 (4131-303)	지속	일반	1,500	5,300	10,000	4,7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사업기간 : '20 ~ 계속
- 시행주체 : 교육부, 자치단체
- 사업내용 :
 - (목적) 지역중심의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교육부 50%, 지자체 50%)

2. 현황 및 필요성

- 일반 평생학습도시는 181개('21년)로 매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없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국회 및 현장의 요구 증가
-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매우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여건에 대한 차별 철폐 주장 등 현장 요구 반영 시급

<현장 및 국회 요구 현황>

- (국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장애인 접근성 환경 개선 요구('8.11.국회 예결위)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18.4.20.), 의정부시('18.10.16), 군산시('19.3.7.)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지역연계체제 구축 예산 요구('19.3.14.)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지역 연계체제 구축 예산 요구('19.3.15.)
- (언론보도) '평생교육센터가 또 다른 보호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19.1.8., 한국일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천명하였으나 시범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예산은 1,500백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지역기반의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예산 확대가 필요

※ ('20) 5개×300백만원=1,500백만원 → ('21) 15개×100백만원=1,500백만원 → ('22) 15개×100백만원=1,500백만원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을 통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대학교, 장애인 단체(기관), 기업 등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업무 협업 강화
- 탈시설 장애인 프로그램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 장애인의 직업역량,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 10,000백만원 편성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10,000백만원 편성 (4,700백만원 증)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별·대상별 교육 불균형 해소
- 일반 평생학습도시에 준하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 지정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 기반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계속 지원 추진

○ 매년 사업 신청 지자체 수*는 확대되고 있으나 국고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지자체 수(신청/선정): ('21년)16개/15개 → ('22년) 32개/13개(전년도 대비 2배 증가, 3:1 경쟁)

○ '22년 기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32개)는 일반 평생학습도시(180개)에 17.7%에 불과한 규모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68개 신규지정에 필요한 68억 증액 필요

○ **요구 예산 : 10,000백만원**

(산출내역) 100백만원 × 100개 지자체* = 10,000백만원

* 계속지원 32개 + 신규지정 68개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인원 확대 : 1,495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요구안	증액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452-306)	계속	기금	204,713	216,341	365,907	149,566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세부 : *근로지원인 지원)
- 사업기간 : '07 ~ 계속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 (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 (사업수행방식) 출연

2.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적 노동을 지원하고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반이며,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근로지원인 예산을 편성하여 중증장애인 노동의 배경이 될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표] 고용노동부,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고용관리비용 지원 513개(중복제외 193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507명 및 근로지원인 4,420명(장애인근로자 4,405명) 지원, 시설장비 145개소(713명) 지원
2020	고용관리비용 지원 443개(중복제외 191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137명 및 근로지원인 7,317명(장애인근로자 7,794명) 지원, 시설장비 151개소(877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 운영
2021	고용관리비용 지원 473개(중복제외 214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1,177명, 및 근로지원인 11,203명(장애인근로자 12,407명) 지원, 시설장비 198개소(1,304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2022	고용관리비용 지원 334개(중복제외 99개) 사업체, 고용관리비용 관련자 614명 및 근로지원인 11,162명(장애인근로자 13,090명) 지원, 시설장비 95개소(431명) 지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

- 고용노동부는 '22년 근로지원인 1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음. 하지만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올해의 경우 '22년 상반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편성한 근로지원인 예산은 대부분 소진되었음.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고용되었음에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함.
- 고용노동부가 불안정한 제도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돌아오게 됨. 현재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인구가 80만명이 넘으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는 턱없이 부족함.
- 근로지원인 예산의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직결되며, 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이에 전장연은 고용노동부에 '23년 근로지원인 예산의 규모를 17,000명 이상 편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나아가 향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연 2,000명 이상 씩 확대하고,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증장애인)의 이용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함.

- 더불어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1:2→1:3)를 통해 부족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공급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공급량에 장애인 노동자를 수 맞추어 지원하고 있음. 근로지원인 1명이 장애인 노동자 다수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장애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됨.

[표] 고용노동부,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근로지원인의 지원: ('22년) 10,000명 → ('23년안) 10,000명
 - 1:2, 1:3 동시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유지를 강화
 - 근로지원인 지원단가를 '23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시급 9,620원)하여 인상
 - 근로지원인 유형별(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운영하여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 이에 전장연은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을 확대를 우선적인 제도 개편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와 근로지원인의 1대1 매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지원 방향을 개편할 것을 요구함.

3. 요구사항

1) 2023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 365,907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149,566백만원 증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1) 근로지원인 인건비(지원금) 확대 10,000명 → 17,000명

□ 2023년 근로지원인 예산 17,000명 확대 및 제도 개편

○ 요구 예산 : 365,907 백만원 (약 3,659억원)

▶ 근로지원인 지원 : 365,907,000천원

- 근로지원인 인건비(지원금) : 363,232,000천원
: 17,000명 * 14,475원 * 125시간 * 12개월 * 98.407% - (단수조정 198,750원)
- 사업운영비 : 519,000천원
- 교육비 : 1,091,000천원

: 교육운영 891,000천원+교육과정 개발 200,000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 시스템 개발 : 1,065,000천원
: 1,064,534,964원+(단수조정 465,036원)

(2)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대비 2023년 전장연 요구안 세부내역 비교

'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23년 전장연 요구안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예산안	산출내역	요구안	산출내역
222,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출연금 : 222,314,000천원 ○ 고용관리비용 : 850,000천원 가. 고용관리비용 : 140,000원*533명*12개월*94.9%+(단수조정 227,440원) =850,000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 : 216,341,000천원 가. 지원금 : 10,000명*14,475원*125시간*12개월*98.407%-(단수조정 198,750원)=213,666,000천원 나. 사업운영비 : 519,000천원 다. 교육비 : 교육운영 891,000천원+교육과정 개발 200,000천 =1,091,000천원 라. 근로지원인 지원 시스템 개발 : 1,064,534,964원+(단수조정 465,036원) =1,065,000천원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3,450,000천원 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 : 150개소*15,000천원=2,250,000천원 나. 통근용 승합자동차 : (20개소*40,000천원)+(20개소*20,000천원) =1,200,000천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1,673,000천원 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6개소*279,000천원-단수조정 1,000천원 =1,673,000천원 	363,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출연금 : 371,880,000천원 ○ 고용관리비용 : 850,000천원 가. 고용관리비용 : 140,000원*533명*12개월*94.9%+(단수조정 227,440원) =850,000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 : 365,907,000천원 가. 지원금 : 17,000명*14,475원*125시간*12개월*98.407%-(단수조정 198,750원)=363,232,000천원 나. 사업운영비 : 519,000천원 다. 교육비 : 교육운영 891,000천원+교육과정 개발 200,000천 =1,091,000천원 라. 근로지원인 지원 시스템 개발 : 1,064,534,964원+(단수조정 465,036원) =1,065,000천원 ○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 3,450,000천원 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 : 150개소*15,000천원=2,250,000천원 나. 통근용 승합자동차 : (20개소*40,000천원)+(20개소*20,000천원) =1,200,000천원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1,673,000천원 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 6개소*279,000천원-단수조정 1,000천원 =1,673,000천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개편 : 8.9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요구안	증액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452-316)	계속	기금	2,768	2,301	3,192	891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사업)
- 사업기간 : '19~ 계속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목적)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지자체 50%)

2.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부터 시작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4년간 진행되고 있음. 그동안 이 사업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물려 매년 실적 미달에 인하여 수차례 지침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년 참가자와 동료지원가 인원수도 조정되었음. 그리고 2021년 동료지원가 활동비는 월급제로 월80만원으로 실

적과 상관없이 전환되어 사실상 실적 책임은 동료지원가가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었지만, 완전히 동료지원가의 책임이 가벼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올해는 2021년 실적 부진으로 참가자 8000명과 동료지원가 400명(20:1)으로 대폭 줄어든 형태로 변화가 있음. 이런 변화들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발달영역에서 높은 참여률을 보여주고 있음.

[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내용]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2019	동료지원가 활동 유형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지체장애
2021	동료지원가 활동 유형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정신장애	
2022	동료지원가 활동 유형	발달장애	지체, 뇌병변, 정신장애	

○ 2019년 사업 초기에 발달, 정신, 지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2021년부터 정신장애 영역에서 참여자 확보가 어려워 정신장애 영역을 지체, 뇌병변 영역으로 합쳐 진행하였음. 그리고 동료지원가의 월급제, 슈퍼바이저 급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지침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한자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음.

○ 2019년 41개 사업수행 기관으로 시작된 동료지원가 사업은 2022년 5월까지 전 진행된 59개 사업수행 기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자와 동료지원가 수는 줄었지만, 사업수행 기관은 늘어날 전망이다. ※ 2022년 5월 기준

서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왕지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지회,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회, 호매실장애인복지관, 군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의정부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주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재활시설 나무
대전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인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발달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지역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
강원	(사)강원도부모연대 원주시지부, 횡성군지역장애인자립지원센터, 태백장애인복지관, (사)강원도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인제군지부, (사)강원도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내일올려놓는멋진여성 여수지지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 아름다운세상
경남	진해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이 사업이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문제와 중증장애인이 처리할 업무와 많고 기관과 동료지원가 개인이 부담져야할 부분들이 많아 사업초기에 적지 않은 기관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나마 동료지원가 월급제, 실적 기준을 완화해줌에 따라 그래도 예전에 비해 사업수행 기관 입장에서 힘들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움.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놓여져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료성을 발휘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동료지원가 급여 인상과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슈퍼바이저 급여 현실화(동료지원가와 같은 임금 기준)와 아직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고 사업기관 운영비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요구사항

1) 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 3,192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891백만원 증액

2)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동료지원가 1인당 참여자 수 : 20명 → 17명
- (2) 동료지원가(300명, 인건비 월 930,000원) 인건비 증액
- (3) 참여자 수당 : 5,000원, 15회 → 6,000원, 15회
- (4) 슈퍼바이저 인건비 : 50만원, 70명 → 93만원, 90명(인건비 증액, 동료지원가 5인 이상 배정 시 1명 추가)
- (5) 참여자 상해보험료 : 0원 → 1인 20,000원
- (6) 동료지원가 업무추진비(활동비, 재료비 등) : 0원 → 1인 월 50,000원(인건비 분리)

3) 2023년 예산(안)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개편

▲ 요구 예산 : 3,192백만원

- ▶ 사업 홍보 : 3백만원 × 17개시도 = 51백만원
- ▶ 서비스 참여자 인원 하향 조정(동료지원가 1인당 참여자 수 17명) : 6,000명 → 5,000명
- ▶ 동료지원가(300명, 인건비 월 930,000원) 인건비 증액
 - 인건비(930,000원) × 300명 × 12개월 × 50% = 1,674백만원
- ▶ 참여자 수당 : 1회(5,000, 15회) → 1회(6,000원, 15회)
 - 참여자 수당 : 5,000명 × 6,000원 × 15회 × 50% = 225백만원
 - 취업연계수당 : 5,000명 × 200,000원 × 30% × 50% = 150백만원
- ▶ 슈퍼바이저 : 90명(수행기관 6시간 근무 기준) 인건비 인상
 - 슈퍼바이저 930,000 × 90명(기관별 1인/ 5인 이상 배정될 경우 1인 추가) × 12개월 × 50% = 502.2백만원
- ▶ 사업운영비(신설)
 - 상해보험 : 5,000명 × 20,000원 × 1회 × 50% = 500백만원
 - 동료지원가 업무추진비(활동비, 재료비 등) : 300명 × 50,000원 × 12개월 × 50% = 90백만원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 설치·운영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 52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취업지원 (1452-31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	기금	-	-	5,250	5,250

<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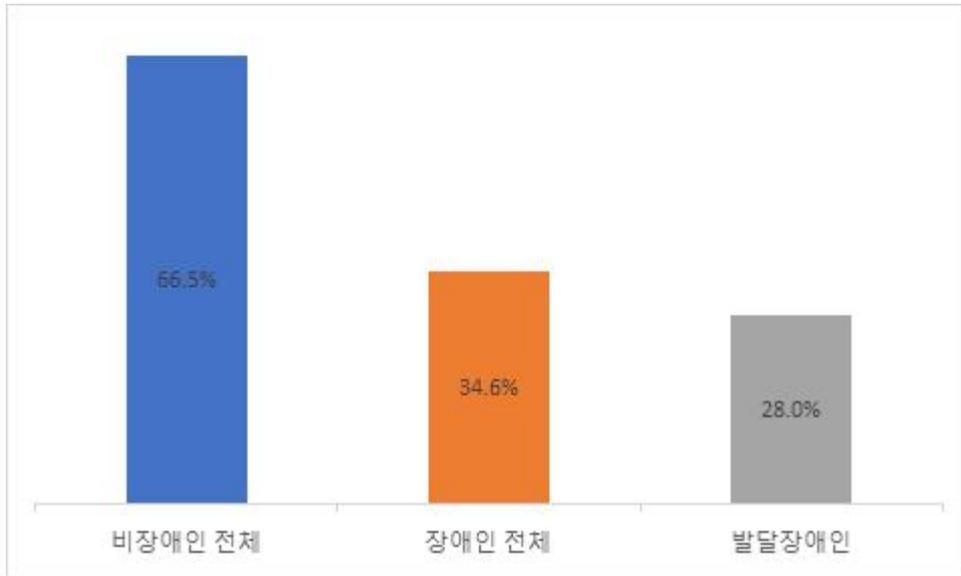
- 사업명 : 장애인취업지원(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 (목적) 발달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실시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100%)

2. 현황 및 필요성

1) 열악한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 2021년 발달장애인 고용률: 28.0%

[표1]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 2021년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자 비율

- 취업한 발달장애인 중 39.2%(직업재활시설 26.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2.7%)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표2]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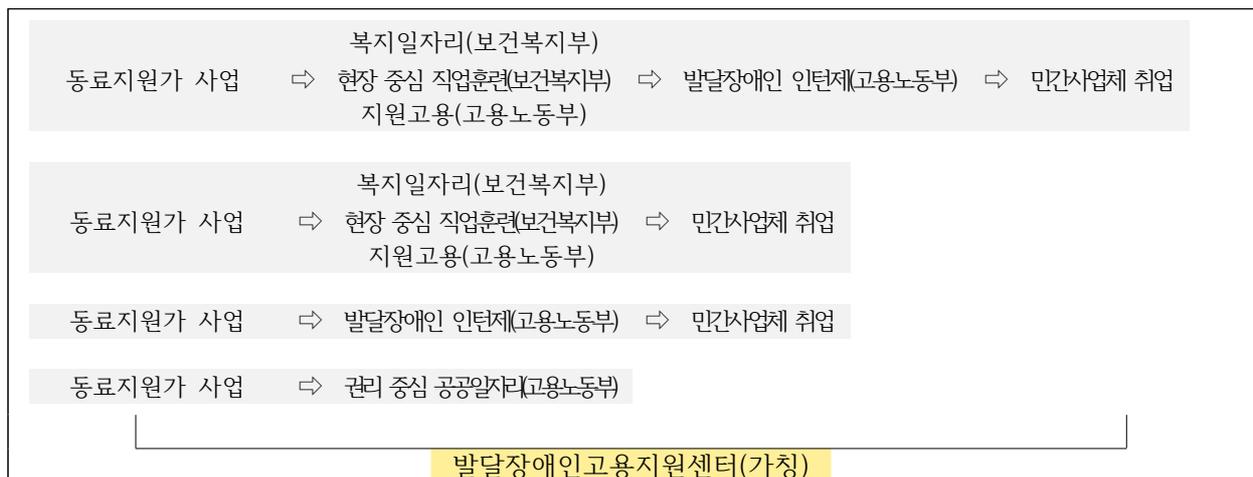
2)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을 저해하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지원고용은 先배치 後훈련의 현장 중심 취업지원서비스로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임
- 현행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존 장애인 관련 기관에, 참여자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발달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업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복지일자리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장벽으로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3)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위탁 형태의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 설치·운영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서울, 경기, 경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 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3]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방안도



[표4] 현행 중증장애인지원고용과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역할 및 기능 비교

현행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비교
○대상자 선정	○지원고용 이용자 선정 및 접수 ○지원고용 이용자 직무능력 평가 및 선호 직무 파악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 종합 사정 기능 강화
○사업체 선정	○사업체 발굴 및 직무분석	○지역사회 사업체 발굴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사업체 정보 목록 개발 기능 추가
-	○적합 직무 매칭 및 배치 ○개인별지원고용계획 수립 및 시행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등 인력 배치 ○보조기기, 이동지원 등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이용자의 선호 직무와 사업체의 선호 직무를 종합하여 적합 직무 매칭 기능 추가 ○개인 맞춤 지원고용 운영 체계 구축 기능 추가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기능 추가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에 의한 사전 및 현장훈련 지원 기능 추가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후 적응지원	
-	○사업체 내 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주,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기능 추가
○운영비 지원 방식	○단일 사업 위탁으로 이용자 수에 따른 최소 경비 지원	○민간에 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를 위탁하여 운영 ○서울, 경남, 경기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 예) 서울 커리어플러스 센터

4)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 설치·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형성.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낮시간 활동,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절감.
-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인력 고용 등으로 비장애인 고용 창출

3. 요구사항

1)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가칭) 설치·운영 예산 5,250백만원 편성

(1) 신규 사업

2)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예산 요구 주요근거

(1) 이용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이용 인원 수(구간)	운영비 지급
50명 미만	1억원 5천만원 (운영 전담인력 3명 이상 배치)
50명 이상 ~ 100명 미만	2억원 (운영 전담인력 4명 이상 배치)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3억원 (운영 전담인력 5명 이상 배치)
200명 이상	4억원 (운영 전담인력 6명 이상 배치)

(2) 이용 인원에 따라 각각 5개소 시범 설치·운영

□ 발달장애인지원고용센터 설치·운영

○ 요구 예산 : 5,250백만원

- ▶ 50명 미만: 5개소 × 150백만원 × 100% = 750백만원
- ▶ 50명 이상 ~ 100명 미만: 5개소 × 200백만원 × 100% = 1,000백만원
- ▶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5개소 × 300백만원 × 100% = 1,500백만원
- ▶ 200명 이상 : 5개소 × 400백만원 × 100% = 2,000백만원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 105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취업지원 (1452-311) 발달장애인 인턴제	신규	기금	-	-	10,545	10,545

<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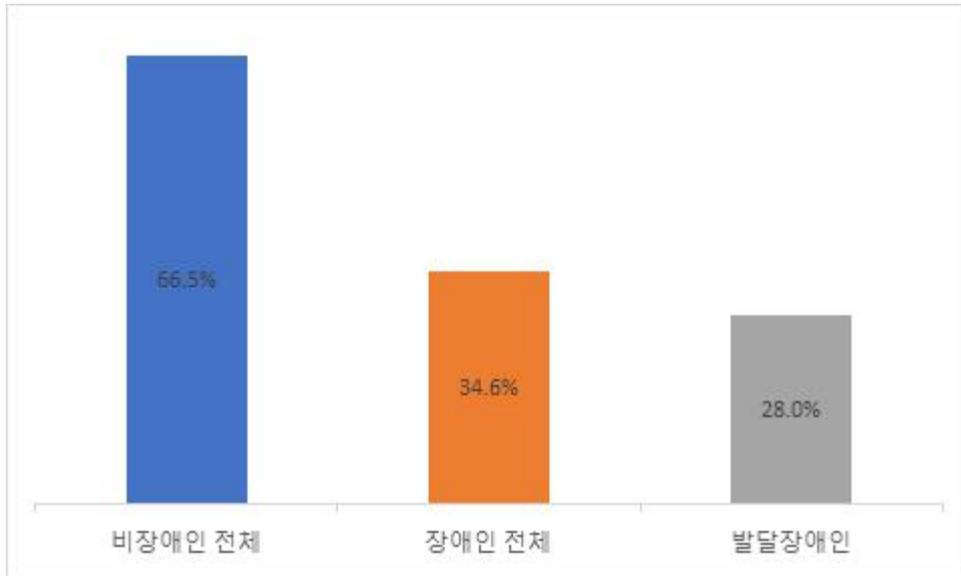
- 사업명 : 장애인취업지원(발달장애인 인턴제)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 (목적) 발달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직무능력 및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100%)

2. 현황 및 필요성

1) 열악한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 2021년 발달장애인 고용률: 28.0%

[표1]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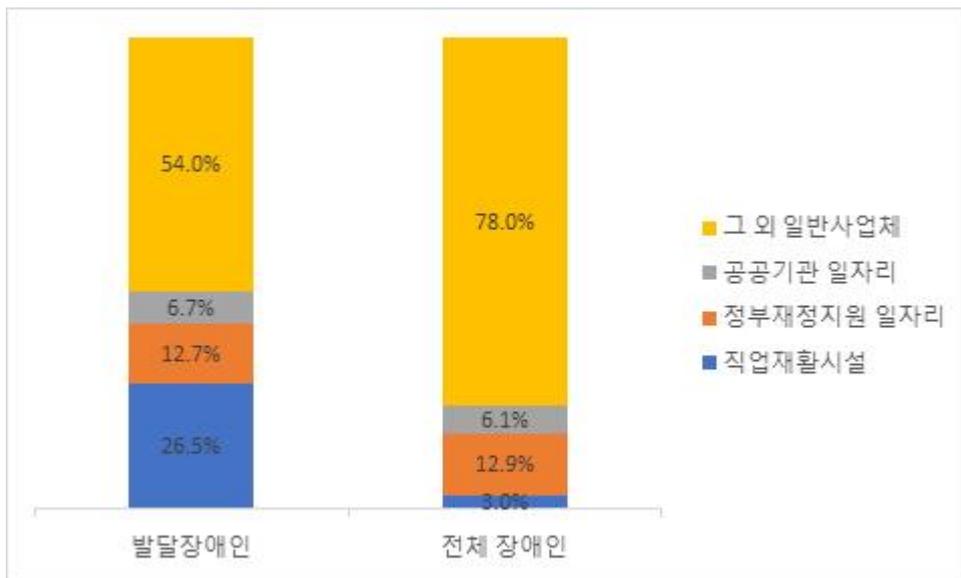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 2021년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자 비율

- 취업한 발달장애인 중 39.2%(직업재활시설 26.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2.7%)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표2]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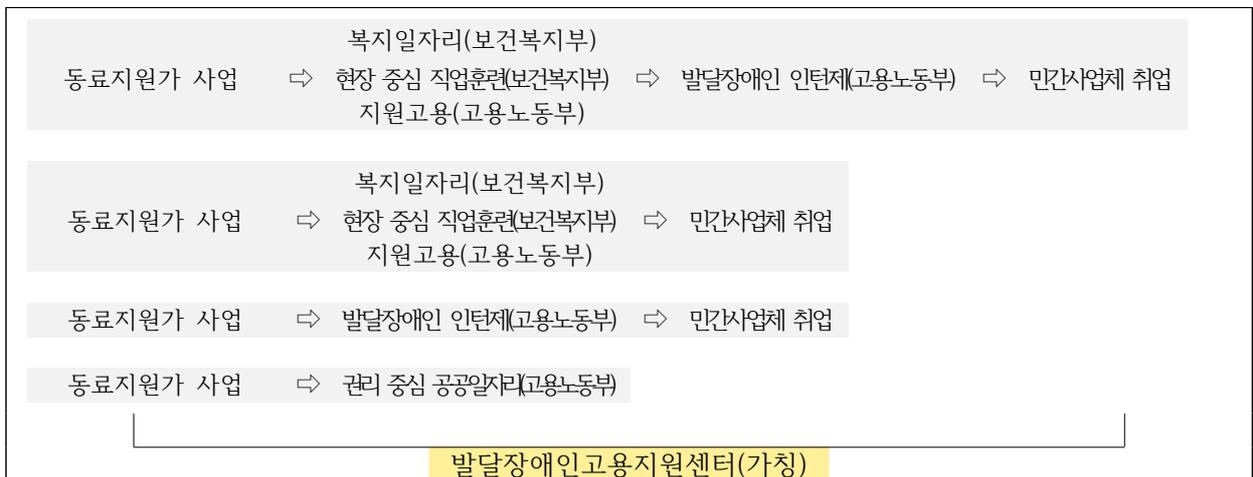
2) 장애인 인턴제에서도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 장애인 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임
-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대부분 만 50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3)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先배치 後훈련을 통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현장 중심 직업훈련과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이 대표적임
-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이용 기간 제한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취업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이용한 후 취업이 어려울 경우, 인턴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일자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 기간이 지나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됨. 따라서 복지일자리를 마친 후 일반사업체 인턴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 있음.
- 현재 서울, 경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 인턴제를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

[표3]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방안도



4)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형성.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낮시간 활동,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절감.
-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고용 등으로 비장애인 고용 창출.

3. 요구사항

1) 2023년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예산 10,545백만원 편성

- (1) 신규 사업

2)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예산 요구 주요근거

- (1)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1,000명
- (2) 지원 기간: 12개월

□ 발달장애인 인턴제 도입

○ 요구 예산 : 10,545백만원

▶ 인턴채용지원금:

- 800,000원 × 1,000명 × 12개월 × 지급률75% = 7,200백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650,000원 × 1,000명 × 12개월 × 지급률64% × 정규직전환률 67% = 3,345백만원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1,014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 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취업지원 (1452-31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계속	기금	5,362	5,362	106,833	101,471

<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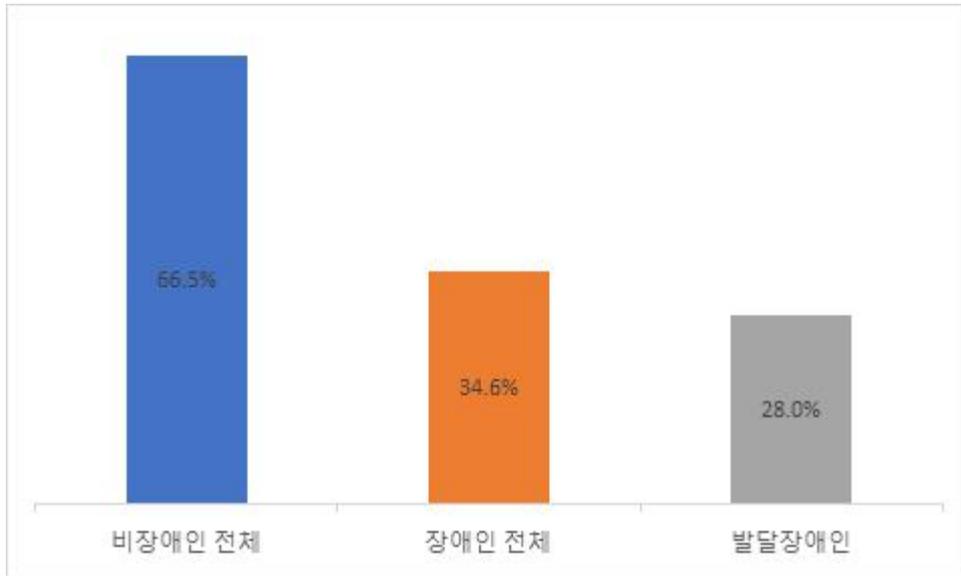
- 사업명 : 장애인고용관리지원(중증장애인지원고용_직무지도원)
- 사업기간 : 계속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 (목적)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시 직무지도 등 인적지원을 제공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100%)

2. 현황 및 필요성

1) 열악한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 2021년 발달장애인 고용률: 28.0%

[표1] 발달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재구성

○ 2021년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자 비율

- 취업한 발달장애인 중 39.2%(직업재활시설 26.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12.7%)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표2] 발달장애인 직장유형별 취업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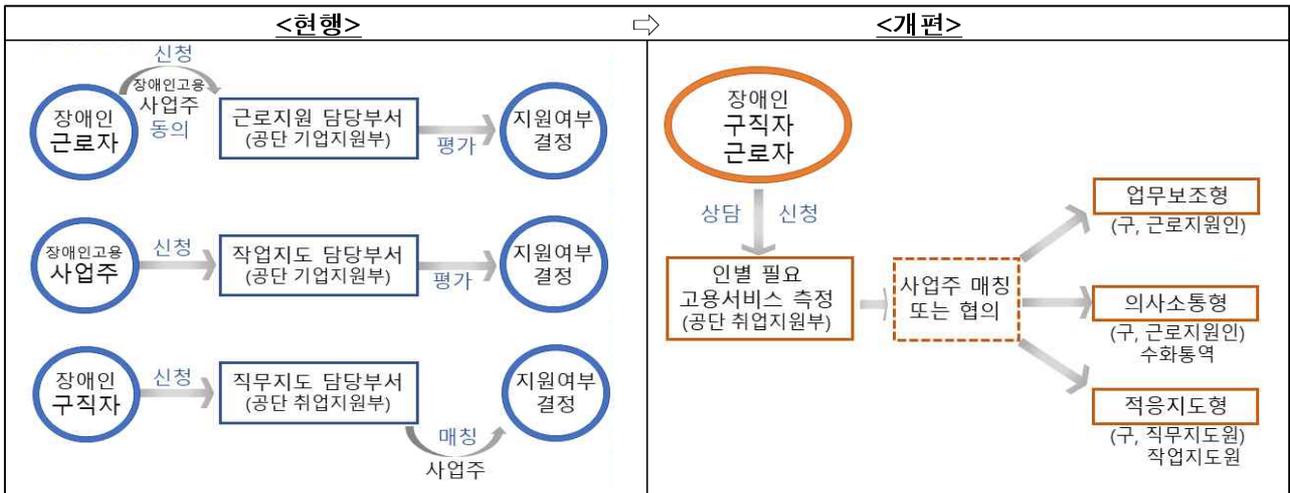
2) 분절된 인적지원제도의 문제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인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근로지원인: 핵심업무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부수적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인력
 - 직무지도원: 지용고용 사업에서 현장훈련 및 취업 후 적응단계에서 업무지도, 직장적응 및 정서관리 등을 지원하는 인력
- 인적지원제도의 분절적 지원체계로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적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 인적제도가 포함된 사업과 그에 따른 담당부서가 서로 다르고 인건비 단가로 달라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개인별지원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례로 발달장애인이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을 통해 사업체에서 훈련하고 그 사업체에 고용되었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사업체에서 훈련하고 적응하는 기간(최대 6개월)은 직무지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그 후에는 별도로 근로지원인을 신청해야 하고 근로지원인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3)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으로 구분된 인적지원제도를 근로지원인으로 개편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인력이 근무지원 혹은 직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근로지원인(최대 2년)과 직무지도원(최대 6개월) 지원 기간을 폐지하고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시간과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을 근로지원인으로 개편 후 근로지원인 수를 확대할 필요 있음

[표1] 인적지원제도 전면 개편(안)



4) 인적지원 제도 개편 및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형성.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낮시간 활동,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절감.
-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 고용 등으로 비장애인 고용 창출.

3. 요구사항

1) 2023년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예산 106,833백만원 편성

(1) 2023년 예산 대비 101,471백만원 증

2)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예산 요구 주요근거

- (1) 인적지원제도 통폐합 (기존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화)
- (2) 근로지원인 급여 단가로 통일 : 직무지도원 일단가 40,000원 → 시간 단가 14,475원
- (3) 지원인력 및 이용 기간 확대
 - 지원인력 4,274명 → 5,000명
 - 이용 기간 최대 36.05일 → 125시간 × 12개월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요구 예산 : 106,833백만원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

- $5,000\text{명} \times 14,475\text{원} \times 125\text{시간} \times 12\text{개월} \times 98.407\% = 106,833\text{백만원}$

장애인 언론 지원

시혜와 동정 아닌 당사자적 시각 위한 장애인 언론 지원 : 10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1400) 신문발전지원 (1463) 언론공익사업 (1463-303) 인권증진보도지원	계속	일반	200	152	1,152	1,0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언론공익사업 - 읽기문화진흥사업 - 인권증진보도지원
- 사업기간 : '10 ~ 계속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업내용 :
 - (목적) 사회 취약계층·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심층기획취재 보도
 - (근거법령)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전면 개정 '09.7.22),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사업수행방식) 직접수행, 민간보조

2. 현황 및 필요성

- 2010년 신설된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하여 언론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적 여론형성을 목적함.
- 언론진흥기금은 신문독자의 의견 반영과 권익을 보장하는 신문을 지향하고, 신

문잡지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독자 저변 확대 및 정보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언론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국민 정보복지 향상과 뉴스의 공익적 활용가치 증진 도모”를 향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처 내 건의사항에서도 “언론의 공익적 목적 달성 및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함.(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예산안, 2020)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소외계층의 권익신장 및 저널리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문제 발굴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심층보도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의 언론사만을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점의 보도에 있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
- 특히 사회활동의 전 영역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매체에서 시혜적·동정적 관점으로 철저하게 대상화 되어 다루어짐. 2014년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한국 정부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당사국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
- 언론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외계층보도지원 중 장애인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요구사항

1) 2023 장애인 언론 지원 예산 1,152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1,000백만원 증

2) 장애인 언론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1) 장애인 언론 5개 매체 지원 사업 세분화 및 별도 예산 지원

□ 장애인 (인터넷) 언론 보도지원 사업 신규화

○ 요구 예산 : 1,200백만원

▶ 장애인언론 보도 지원 사업 : 1,000백만원

- 200백만원 × 5개 매체 = 1,000백만원

▶ 취재 지원비 : 148백만원(10사 x 14.8백만원)

▶ 사업 운영 경비 : 4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특성 고려한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 22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	신규	일반	-	-	2,208	2,208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 **(목적)**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공공일자리로,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공연, 장애인인권교육 및 장애인영상제작 등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 공공일자리 창출
 -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 2,526,201명 중 경증장애인의 취업자가 728,615명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153,275명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651개(2018년 12월 기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장애인 18,205명 중 17,490(96%)명이 중증장애인으로(2019, 장애인백서), 「최저임금법」 제7조의1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7년 장애인단체 등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요구하며 고용노

동부와 TF를 구성, ① 동료상담활동, ② 권익옹호활동, ③ 인식개선활동, ④ **문화예술활동**, ⑤ 민원안내활동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유형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도입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중증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공공일자리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공공일자리로서, 현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NGO)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공연, 장애인인권교육 및 장애인영상제작 등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공공일자리 업무로 인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고용기관’으로 제시된 기관·단체>

구분	근거	규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62개소 (2017-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①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100여개 (미등록단체 포함)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록 50여 개소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국 80여 개소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3,000여 개소

* 주: 장애유형별 기관 및 단체 추가될 수 있음

* 출처: 2018,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5W1H 토론회 P19, 수정 후 인용

- 한편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예술 활동가 중 50.5%(총 584명)가 발달장애인으로,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대다수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발표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201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에 중증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신규 사업 증액을 요구함

3. 요구사항

1) 2023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 예산 2,208백만원 편성

(1) 신규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시간제 일자리(월 80시간) 100명
- (2) 복지일자리(월 56시간) 100명
- (3) 기타 사업비

□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공공일자리 신규사업

○ 요구 예산 : 2,208백만원

- ▶ 시간제일자리(월80시간)/100명
 - 인건비(976,000원) × 100명 × 13개월 = 1,269백만원
 - 운영비(100,000원) × 100명 × 12개월 = 120백만원
- ▶ 복지일자리(월56시간)/100명
 - 인건비(568,000원) × 100명 × 13개월 = 738백만원
 - 운영비(50,000원) × 100명 × 12개월 = 60백만원
- ▶ 기타 사업비 : 21백만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 6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신규	일반	-	-	600	6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 사업기간 : 신규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
 - (목적)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사업수행방식) 국고(100%)

2.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우리 사회에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거의 전무하며, 현재 지원되는 문화·예술 관련 지원 서비스는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문화 및 여가 활동으로 93.9%가 TV 시청, 38.6%가 휴식, 38.1%가 인터넷 이용 등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변용찬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는 발달장애인의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역량 향상을 통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1974년부터 ‘Arts Project Australia’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예술가 발굴 및 지원, 발달장애인의 예술가로서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예술 작품 전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소(가칭) 설치·운영이 필요함

3. 요구사항

1) 202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예산 600백만원 편성

(1) 신규사업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문화·예술 창작소 인건비
- (2) 문화·예술 창작소 기능보강비
- (3) 문화·예술 창작소 사업비
- (4) 문화·예술 창작소 연구개발비
- (5) 문화·예술 창작소 운영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소 설치·운영 : 1개소 시범 운영

○ 요구 예산 : 600백만원 (신규)

▶ 600백만원(8인 기준) × 1개소 : 600백만원

- 인건비 = 320백만원(8인 기준)

- 기능보강비 = 40백만원

- 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사무용 컴퓨터 등 구입비, 기타 사무용 기기 구입비, 광고판 설치비 등

- 사업비 = 141백만원

- 홍보비, 행사 운영비, 온라인 사이트 구축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발달장애인 발굴 및 지원비, 전문 인력 교육·연수 과정 운영비 등

- 연구개발비 = 80백만원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비, 발달장애인 지원 인력 양성 위한 교육과정 개발비 등

- 운영비 = 19백만원

- 여비, 회의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함께누리지원사업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 목적 장애인 예술 환경 지원 : 23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함께누리지원사업 (1633-304)	계속	일반	22,580	26,084	28,354	2,27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함께누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07 ~ 계속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
 -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가치실현을 위해, 1) 창작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 2) 장애예술의 특성 및 고유성을 사회적 공유·확산, 3)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창조적 문화사회 구현에 기여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를 지원, 공연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 **(근거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2. 현황 및 필요성

- 함께누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모든 문화예술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공약과 국정과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권’이란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문화권’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및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 한편 2020년 함께누리지원사업은 창작활성화지원, 문화예술향수지원 등의 분야에서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함께누리지원사업의 지원금 상당 부분이 특정 기관 및 소속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풀뿌리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관람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비용부담(43.9%),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부족(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분야 향유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2018,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에 장애인문화예술 자조모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장애인 인권영화제, 스페셜 문화예술 창작소 등 함께누리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함

3. 요구사항

1) 2023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 28,354백만원 편성

(1) 2023 정부안 대비 2,270백만원 증

2)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장애인문화예술 자조모임 지원
-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프로그램 운영
- (3) 장애인 인권영화제

□ 함께누리지원사업 신규사업 추가 및 증액

○ 요구 예산 : 28,354백만원

- ▶ 장애인문화예술 자조모임 지원 : 1,000백만원
 - 당사자 5명 이상의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 50백만원 × 20개
-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프로그램 운영 : 850백만원
 - 50백만원 × 17개 시·도
- ▶ 장애인 인권영화제 : 420백만원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 금액 = 100백만원
 - 20백만원 × 16개 시·도 = 320백만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 지원 확대 : 13억 원 증액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사업코드)	구분	회계구분	'22 예산안	'22 정부안	'23 예산요구안	증액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5531-301)	계속	일반	27,521	28,058	29,358	1,300

< 사업 개요 >

- 사업명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 사업기간 : '06 ~ 계속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
 - **(목적)** 1) 장애인체육정책 수립, 2) 장애인 생활·전문체육 활성화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지원, 3) 국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전문체육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체육국),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2.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체육센터에서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인인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수영장 이용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음(사건 18진정0695900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입장 불허). 또한 같은 해에 뇌전증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때 진단서 제출과

보호자 동행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 차별 행위 중단, 관련 규정 개정,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음 (사건 19진정 0074300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 제한). 이에 일반 체육시설에서 발달장애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육 시설 대상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 있음

- 한편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권 주변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이 발달장애인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6.9%)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관·장애인시설(25.5%)’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2018,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체육시설 내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보급 및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함

3. 요구사항

1) 2023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 29,358백만원 편성

- (1) 2023 정부안 대비 1,300백만원 증

2)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요구 주요근거

- (1)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2) 체육시설 장애인권교육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예산

○ 요구 예산 : 28,821백만원

- ▶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1,000백만원
 - 국민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 체육시설 장애인권교육 : 300백만원

예산 없이 권리 없다!
한국판T4프로그램 철폐하라!

장애인권리입법
국회 요구자료

장애인권리입법 요구안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지역사회 완전 통합”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실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4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장” 위한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가) 제정

5

“생애주기별 교육권 보장”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6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7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8 “지원주택 제도화” 위한
주거약자지원법 개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9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10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1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강화”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2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국회 요구안

1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통과

2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 추진 배경

○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서비스 보장 요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시,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두었으나, 이러한 장애등급제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비판 제기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정과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및 욕구에 따라 개별화 권고(2014)

○ 역대 정부 공약사항 및 현 정부 국정과제 채택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인 문재인·박근혜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42-4)을 국정과제로 채택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1년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 계획
- 20대 국회 당시,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

2. 검토 방향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 개념 재정립, 장애인의 제권리 명시,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실체법적 요소를 지닌 기본법으로 제정
- 장애서비스법 제정 :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지원과 운영 관련 사항 규정

3. 주요 내용

○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등록제 폐지

-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로 정의
-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사회 활동 및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이용자 제도 도입, 지원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용어 사용 제안

○ 장애인의 제권리 규정

-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장애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기본법(모법)으로서의 성격 명확히 규정
- 지역위원회를 통한 장애 관련 서비스/급여 결정 이의 신청 제도 마련

○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 장애정책 심의 체계, 장애서비스 복지 전달체계,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및 장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등 4대 주요 체계 신설 또는 강화
- 국가장애인위원회 :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 광역 및 기초 수준의 장애인정책위원회 구성 (국가장애인위원회 → 시도위원회 → 시군구위원회)
- 국가장애서비스공단 : 국가가 미리 공적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장애서비스공단(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종류와 양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전달 체계 구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 국가장애연구원 : 장애 관련 분야 연구개발, 관련 산업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장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활성화

○ 재원확보 방안 명시

-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을 내국세의 일정비율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장애보험료 신설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매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는 절차 마련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 운영('21년 3월~6월)
- 2021년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건 상정
- 국회 법안 발의 및 입법 검토('21년 9월~)
- 2021년 9월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혜영의원등 16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장혜영 · 이은주 · 배진교 · 심상정 · 강은미 · 류호정 · 김두관 · 이수진 · 김성주 · 고민정 · 허종식 · 남인순 · 강민정 · 김상희 · 용혜인 · 최혜영

- 2021년 10월 14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 25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김민석 · 강득구 · 고민정 · 김성주 · 김영주 · 김원이 · 박상혁 · 서영교 · 서영석 · 안호영 ·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 윤준병 · 이병훈 · 이성만 · 이용빈 · 이용선 · 이학영 · 임오경 · 정성호 · 정태호 · 최혜영 · 한병도 · 허종식

- 2021년 11월 5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애서비스법), 장혜영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장혜영 · 배진교 · 강선우 · 김홍걸 · 김예지 · 류호정 · 심상정 · 강은미 · 최혜영 · 이은주 · 용혜인 · 강민정 · 김성주

- 2021년 11월 18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 22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최혜영 · 양이원영 · 홍성국 · 강준현 · 오영환 · 이용우 · 임오경 · 남인순 · 김남국 · 기동민 · 윤미향 · 김성주 · 정청래 · 위성곤 · 권인숙 · 김원이 · 임호선 · 이수진(비) · 이탄희 · 김용민 · 서영석 · 유정주

-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2022년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22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관련 내용 요약)

○ 전문위원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장복법 개정안 장혜영/김민석/최혜영 의원(안) 비교 분석
- 탈시설지원법 쟁점사항 설명

○ 복지부 설명(1차관 양성일)

-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 차이 있어 조율 필요
- 2월 임시회에 조율한 법안으로 논의 제안

○ 최혜영 의원

- 탈시설지원법 별도 제정 필요성 강조
- 쟁점사항별 설명

○ 정춘숙 의원

- 논의를 미뤄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 이종성 발언

-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 차이 언급
- 법안별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검토 소소위(TF) 제안
- 탈시설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자립지원 또는 지역사회 전환 대체 제안)
- 시설 필요성 주장
- 탈시설 지원법 별도 제정 반대(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권리보장법에 담자는 취지)

○ 이달곤 의원 질문

- 정부에서 법안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 복지부 답변(1차관 양성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 언급

○ 최혜영 의원 마무리 발언

- 연내 공청회 요청

○ 강기윤 소위원장 정리

- 김성주 간사에게 빠른 시간 내 공청회 일정 조율 요청

○ (11.25) 법안심사2소위 정춘숙 의원 발언

- 양당 간사에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관련 빠른 시일 내 공청회 개최 요청

※ 2022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관련 내용 요약)

○ 전문위원 설명

- 작년 11월 소위 논의사항으로 복지부가 통합된 법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장애인권리보장법&장복법 개정안 장혜영/김민석/최혜영 의원(안) 비교 분석 : 국가장애인위원회 대통령 산하 상설화, 장애인지예산, 기금설치여부, 단체소송, 시설 단계적 폐쇄, 탈시설 장애인 초기 정착 지원, 탈시설 용어 등 김민석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설명
- 탈시설지원법이 독립법 제정되는 것은 상징성 등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는 언급

○ 복지부 설명(1차관 양성일)

- 탈시설지원법,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의 각 조항별 부처 의견 검토 요청
- 단체간 부처간 입장이 매우 상이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 진행 가능
- 상임위에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절차에 대한 의견(통과 시점 등)이라도 주문 요청

○ 이용호 의원

- 소소위 구성 요청

○ 최혜영 의원

- 미루지 말고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
- 복지부가 통합된 법안 만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

○ 복지부 답변(1차관 양성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적 방향 합의 가능하지만 탈시설을 개별법으로 할지 여부와 병합한다면 어느 내용까지 담을지 합의되지 않으면 조문 정리 불가

○ 최혜영 의원

- 탈시설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쓰는 용어
- 탈시설지원법은 한시적 법안
- 시범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법 통과 시급
- 정부 로드맵이 20년이니 시설 폐쇄 기한 20년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탈시설지원법 별도 제정 필요성 강조
- 장애인권리보장법 김민석 의원(안)의 쟁점 의제별로 입법 필요성 언급

○ 이종성 의원

-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위상의 문제 보다, 상설화 등의 운영 개선이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 탈시설은 쟁점사항을 소소위를 통해 정리해야 다음 단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 지역사회 준비 없이 탈시설 어려움

○ 김성주 의원

- 시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
- 소소위 제안에 동의 입장

○ 최혜영 의원

-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답답한 심정 토로 (정부는 통합안 내지 않고,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 김성주 의원

- 방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논의 단위를 구성하여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정부에 요청

○ 강기윤 소위원장 정리

-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단에게 양측 의견 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안 제출 요청

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내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 조치 권고

*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 2011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4항 개정

*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을 둠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1,557곳의 장애인 29,662명

* 2017년 국가인권위, 10년 이상 거주(58.1%), 비자발적 입소(67%)



시설 규모별 장애인 거주시설 개수와 거주인 수 현황. (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욕구 실태



자료: 2016년 경기복지재단

* 국정과제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22년)

: 장애인거주시설예산은 지속증가(2021년, 10.1%) 탈시설장애인의 주택 및 정착금 지원 부재

* 2021년 2월 기준. 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 177명(14.5%) 확진(전체인구 감염수준의 4.1배)

2. 검토 방향

○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기본권 명시
- 보편적인 지역사회 탈시설-자립생활 기본서비스 보장
- 시설폐지(신규시설 설치금지) 및 신규입소 금지
-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및 권익옹호단체 연계 상시화

2012 유럽 탈시설화 공동 기준

탈시설은 집단적 처우나 '시설적 문화'로 인해 모든 사람의 꿈, 자존감,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도록 하는 '시설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및 지역사회지원서비스 확대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

- * 위원회는 탈시설화 전략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우려함
- *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인권모델에 입각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장애인거주시설 및 전달체계 중심의 시설서비스 재편 금지

UN CRPD 일반논평 5 :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관련한 장애물들

탈시설 전략과 계획의 부재,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19조를 적절히 시행하는지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 조직의 부족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을 야기한 부적절한 분권화

○ 범죄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장애인탈시설지원 의무화

- 기본 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시설은 시설폐쇄명령과 법인 설립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나, 시설문화 및 장애인 삶의 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를 연결하여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 탈시설 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보장
-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가, 지자체가 함께 보장
- 시설수용시대를 종결하고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의 정의 규정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안 제2조)

○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제공 등 (안 제25조, 제26조)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

-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 (안 제32조)

○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제50조)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0년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등 6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은미·고영인·권인숙·권철승·김민석·김상희·김성주
 김수흥·김승남·김승원·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호정·민병덕·박영순·박완주
 박 정·박흥근·배진교·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송영길·심상정·양경숙
 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오영환·용혜인·위성곤·유동수·윤영덕·윤재갑·윤준
 병·윤호중·이광재·이규민·이상헌·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은주·이재정·이
 탄희·인재근·임오경·임종성·장경태·장혜영·전혜숙·정일영·정춘숙·정필모·
 정태호·조승래·진선미·최혜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

-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2022년 4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22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보고서 주요쟁점
1)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함
2) 사회적 합의과정 : - 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바탕으로 한 논의
- 자립인프라 구축 속도, 재정여건, 장애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여부(p12)

수정의견
- <u>탈시설자립생활은 통합돌봄법안 및 거주시설개편사업으로 대체불가</u> . 오히려 거주시설에 예산을 지속적인 투여는 방해요인임(UN CRPD 일반논평 5)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시범모델 근거 충분. 국내 시범사업은 <u>효과성입증하기 어려운 규모수준임</u>
- <u>중앙정부차원의 입법을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u>
- <u>본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 보호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법안임</u>

○ 관련 법안 제·개정 발의상황

- 2021년 2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 10명 공동발의
 - * 집단거주시설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긴급탈시설)등 의무화
- 2021년 4월 20일,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등 11명 공동발의
 - *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제공, 장애인 주택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관련 내용 요약)

○ 전문위원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장복법 개정안 장혜영/김민석/최혜영 의원(안) 비교 분석
- 탈시설지원법 쟁점사항 설명

○ 복지부 설명(1차관 양성일)

-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 차이 있어 조율 필요
- 2월 임시회에 조율한 법안으로 논의 제안

○ 최혜영 의원

- 탈시설지원법 별도 제정 필요성 강조
- 쟁점사항별 설명

○ 정춘숙 의원

- 논의를 미뤄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 이종성 발언

-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 차이 언급
- 법안별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검토 소소위(TF) 제안
- 탈시설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자립지원 또는 지역사회 전환 대체 제안)
- 시설 필요성 주장
- 탈시설 지원법 별도 제정 반대(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권리보장법에 담자는 취지)

○ 이달곤 의원 질문

- 정부에서 법안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 복지부 답변(1차관 양성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 언급

○ 최혜영 의원 마무리 발언

- 연내 공청회 요청

○ 강기윤 소위원장 정리

- 김성주 간사에게 빠른 시간 내 공청회 일정 조율 요청

○ (11.25) 법안심사2소위 정춘숙 의원 발언

- 양당 간사에게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관련 빠른 시일 내 공청회 개최 요청

※ 2022년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관련 내용 요약)

○ 전문위원 설명

- 작년 11월 소위 논의사항으로 복지부가 통합된 법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장애인권리보장법&장복법 개정안 장혜영/김민석/최혜영 의원(안) 비교 분석 : 국가장애인위원회 대통령 산하 상설화, 장애인지예산, 기금설치여부, 단체소송, 시설 단계적 폐쇄, 탈시설 장애인 초기 정착 지원, 탈시설 용어 등 김민석 의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설명
- 탈시설지원법이 독립법 제정되는 것은 상징성 등 충분히 의의가 있다라는 언급

○ 복지부 설명(1차관 양성일)

- 탈시설지원법,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의 각 조항별 부처 의견 검토 요청
- 단체간 부처간 입장이 매우 상이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년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 진행 가능
- 상임위에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절차에 대한 의견(통과 시점 등)이라도 주문 요청

○ 이용호 의원

- 소소위 구성 요청

○ 최혜영 의원

- 미루지 말고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
- 복지부가 통합된 법안 만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

○ 복지부 답변(1차관 양성일)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적 방향 합의 가능하지만 탈시설을 개별법으로 할지 여부와 병합한다면 어느 내용까지 담을지 합의되지 않으면 조문 정리 불가

○ 최혜영 의원

- 탈시설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쓰는 용어
- 탈시설지원법은 한시적 법안
- 시범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법 통과 시급
- 정부 로드맵이 20년이니 시설 폐쇄 기한 20년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탈시설지원법 별도 제정 필요성 강조
- 장애인권리보장법 김민석 의원(안)의 쟁점 의제별로 입법 필요성 언급

○ 이종성 의원

-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위상의 문제 보다, 상설화 등의 운영 개선이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 탈시설은 쟁점사항을 소소위를 통해 정리해야 다음 단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 지역사회 준비 없이 탈시설 어려움

○ 김성주 의원

- 시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
- 소소위 제안에 동의 입장

○ 최혜영 의원

-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답답한 심정 토로 (정부는 통합안 내지 않고,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 김성주 의원

- 방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논의 단위를 구성하여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정부에 요청

○ 강기윤 소위원장 정리

-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단에게 양측 의견 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안 제출 요청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가 반영되지 않는 활동지원서비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지원에 있어 거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6.2%)과 대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8.7%)로 14.9%의 인원이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4%에 불과하며, 해당 인원 중 일 최대 16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1구간은 단 12명(0.01%)에 불과.
- 활동지원서비스 판정도구와 급여량이 중증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침해

- 현행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5세가 넘는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최초로 수급 받은 장애인에게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권한을 박탈.
- 시범사업 중인 '보전급여'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보다 높은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수급자 1,600명 중 70명 선정, 2020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급여량이 차감되고 있음.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기준에 불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당하고 있음.
-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본인부담금을 적용,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장애당사자가 아닌 가구 소득을 적용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서비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2. 검토 방향

○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한 법률안 개정과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편

- 활동지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신설.
- 서비스 사정 과정 내 의학적 모델 축소, 개인별 욕구와 환경을 중심으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편.

UN CRPD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의료적 평가에 의존적인 장애등급판정제도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권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및 체계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시행

○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실현

- 중앙정부 차원의 24시간 미지원 및 급여 구간의 저점 평준화 문제.
-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수급 장애인에 대한 차별(헌법불합치 판결).
- 연령 기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권리 박탈.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UN CRPD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대폭 확대 권고
활동보조 서비스 자부담 및 비용에 기준에 관한 가구소득 산정에 관한 우려

3.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한 기본원칙 신설

-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함께 생활·사회 환경, 욕구와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동등한 삶을 위한 우선 제공의 원칙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 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시행

-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재원 조달 방안, 활동지원기관 관리 방안, 활동지원인력 수급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수급 대상 등이 포함된 정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활동지원급여 산정을 위한 조사 과정, 수급자에 대한 전체적 현황과 수급자의 만족도,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기 실태조사의 수립과 시행

○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및 차별 시정

- 1인·취약가구 등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급여량 한도 폐지 (24시간 지원 보장)
-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종합점수 공개 의무화
- 만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수급자와 만65세 이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수급 받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선택권 보장
-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급여량 차감조치 금지
-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조항 폐지

○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 감염병 및 재난 발생, 탈시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긴급 활동지원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2년 4월 20일(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 10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장혜영·강민정·강은미·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수진·이은주·허종식

4.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가) 제정

1.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현주소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2021)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중증장애인	34.6%	7.1%	76.2%
경증장애인	40.3%	6.8%	56.7%
전체 국민	60.4%	3.5%	37.4%

○ 중증장애인이 구직의사를 가질 수 없는 현재의 환경

-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국가통계포털, 2013-2021),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 연도별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13년 78.5% → '14년 75.2% → '15년 79.2% → '16년 78.3% → '17년 78.8% → '18년 77.9% → '19년 77.4% → '20년 78.7% → '21년 76.2%

- 구직을 단념했거나, 심신장애, 휴식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감소되어야만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로 보고되고 있으나(EDI, 2019), 다음과 같은 이유 역시 구직 의사 또는 취업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음

- * 고용 현장의 구성원들이 중증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증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음
- * 전통적인 일자리 형태(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직무 중심 접근이 아닌 직종 중심 접근 방식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
- * 직장동료, 사업주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음
- * 선호하는 직무 또는 적성에 맞는 직무와 관련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를 위한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원하지만 중증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등에 진입하기 어려움
- *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높지 않고, 해당 직장에서의 전망이 불투명함
- * 직장생활 적응에 필요한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 제공받기(기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직장생활 적응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연계·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로 인한 문제점

-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매월 10만원 ~ 20만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일자리마저 부족한 실정임

* 「최저임금법」 제7조 관련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한계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적극적 조치 마련 필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지 못함
- 지난 30여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 긍정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간의 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경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체가 아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검토 방향

○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초점

-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은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함
- 나아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정되는 특별법을 기반의 법체계 마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이 사업들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을 보호고용 등 제한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일반 고용 환경에서 동등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실제적 수준으로 고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

3. 주요 내용

○ 법률안의 목적

-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일반회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와 같은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법률안 체계

- 기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안임

○ 법률안 주요내용

- (목적 및 이념)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법률에 따른 권리로서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및 이와 같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제시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재정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원으로 규정하되, 공공일자리 정원은 정원의외로 산정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미취업자 고용 이행 상황 점검) 중증장애인 고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현황 및 미이행 사유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발굴 및 고용 연계 지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 시장에 진입하도록 홍보, 정보제공, 상담, 동료지원,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정부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개발 및 지원 체계 마련) 다양한 형태의 공공일 자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자 함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대표 발의 추진(예정)

○ 관련 법안 제·개정 발의상황

- 2021년 9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법률개정안, 강은미의원등 17명 공동발의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1. 추진 배경

○ 기존 특수교육법의 성과 및 한계

-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끈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은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 관련 법률로 제정된 바 있고, 1994년, 2007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27차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
- 지난 2008년 전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연한 확대, 무상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증진에 기여하였고, 통합교육 촉진,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존(2008년 이전) 6세~14세 → 변경(2008년 이후) 3세~17세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 43.8%(2008년) → 75.1%(2020년)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신설: 가족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보조기기 제공 등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학급 6,352학급(2008년) → 11,661학급(2020년), 특수학교 149개교(2008년) → 182개교(2020년)
* 특수교육교원 확충: 13,165명(2008년) → 22,145명(2020년)
* 공립의 각급학교 배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법정정원 확보율: 56.5%(2010년) → 82.0%(2020년)

-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양적 성장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의미있게 활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교 졸업 이후 미진학·미취업 학생 비율 지속적으로 증가(교육부, 2009, 2019)

* 고교 졸업자 중 취업률: 2008년 26.6% → 2018년 23.4%
* 고교 졸업자 중 진학률: 2008년 44.8% → 2018년 50.9%
* 고교 졸업자 중 미취업 또는 미진학 비율: 2008년 28.6% → 2020년 37.6%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차별 등의 문제 지속적 발생

* 통합교육 현장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 초·중·고 과정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59.2%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경험
* 유아교육기관 장애영유아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 전체 장애영유아의 23.5%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경험
* 특수학교 내 중도·중복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 특수학교 재학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52.9%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경험
* 2018년 특수학교 3개교 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교육부 차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발표

- 통합교육에 대한 학교구성원 간 만족도 격차 존재(국립특수교육원, 2008, 2011, 2014, 2017, 2020) :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는 2011년 기점으로 특수교사 만족도보다 낮게 평가된 이후 학부모와 특수교사 간 만족도 격차 계속 유지
- 위의 제시된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현행 특수교육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이는 특수교육법 제·개정 필요성 시사

○ 다양한 곳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구분	내용
특수교육법 관련 선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제명 검토 필요(정용석, 2019; 한현민, 김의정, 2008), 주요 특수교육 관련 용어 수정 필요(이상복, 2008), 의무교육 쟁점 사항 고려 의무교육 관련 규정 정비 필요(김운태, 2008; 박창언, 강영심, 김원경,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법령 정비 필요(박창언, 2011) · 진단평가 절차에 대한 구체화(김혜령, 2013; 윤수정, 2018),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내용 정비 필요(김윤실, 김남순, 2008), 치료지원 관련 규정 정비 필요(이병희, 정진화, 2009),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의무 관련 규정 정비 필요(차성안, 2009) ·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 기준 문제(김용욱 외, 2009; 김원경, 한현민, 2009; 박주미, 김재웅, 2013), 통합교육의 운영 문제(류재연, 2013), 교육과정 운영 문제(박창언, 2011) 등 제기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등의 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교사 확충, 특수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등 교원 단체 요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2020년 이후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추진 관련 사건 이후, 국회 차원의 특수학교 설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입법 추진(2018 ~ 현재), 개발지역에 특수학교 부지 마련 특별법 제·개정 추진 등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요구(2018년 3월), 중도중복 장애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요구(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통합교육 지원 확대 등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요구(2020년 및 2021년 관련 토론회) ·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의 교육 지원 확대 관련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법률 개정 요구 · 대학 장애학생의 대학 내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요구
법률 전문가에 의한 개정 요구 (김기룡 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내용을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사례: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보조인력)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이 배치하여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 제공)의 경우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책임자에게 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인력 배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 체계 정비 필요 · 위입하지 않은 규제 사항을 하위법령에 입법한 사례: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는 국가에 대하여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국가(시도교육청)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련 입법 불가피 · 하위법령에서 법률의 위임 범위 일탈 사례: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의무사항). 그러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학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이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완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하위법령 규정

구분	내용
국회의 특수교육 법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 1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학습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강화, 특수교육교원 확충, 대학 장애학생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법의 각 조항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21년 12월, 그간 제안되었던 특수교육법 개정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웅래의원 대표발의(2020.06.10.):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수정 가결, 본회의 통과) *윤두현의원 대표발의(2020.11.09.): 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대안 통과)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021.02.09.):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 제공 근거 마련(계류 중) *김영호의원 대표발의(2021.02.19.):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감축하는 안 제안(계류 중) *조경태의원 대표발의(2021.04.0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제출 책무를 정부가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수정(대안 통과) *권인숙의원 대표발의(2021.04.22.):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채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수정(대안 통과) *김철민의원 대표발의(2021.04.22.):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대안 통과) *김철민의원 대표발의(2021.04.28.):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 지원 강화(대안 통과) *강민정의원 대표발의(2021.05.12): 병원 등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사 배치 및 심리적 지원 근거 마련(대안 통과) *서동용의원 대표발의(2021.06.30.):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 근거 마련 등(대안 통과)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021.07.23):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 지정·운영 근거 마련(계류 중) *강선우의원 대표발의(2021.11.24):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성교육 실시 및 성의식·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계류 중) *권인숙의원 대표발의(2022.03.23):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계류 중) *이종성의원 대표발의(2022.04.01.): 특수교육기관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 근거 마련(계류 중) *조승래의원 대표발의(2022.07.22.):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2022.08.24.), 강득구의원 대표발의(2022.09.05.),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22.09.15.) 등

○ 최신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 제5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 ~ 2022)에 따라 이미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 포스트코로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지원 방안 등이 특수교육법에 포함되어야 함

* 제5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 ~ 2022)에는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정다운학교 운영), 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제안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

* 교육부 발표 ‘장애학생 인권보호대책’(201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학습지원 대책’(2020)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각종 특수교육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관련 입법 불비로 인해 후속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어려움 존재

－ 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검토 방향

○ 장애영아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완전무상교육 실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 고도화 및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초점

-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무상의 비용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비용 전체를 포함하는 등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유아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교원 확대 배치,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여건 마련

-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로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하고, 행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동지원 관련 자격 소지 특수교사 배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 확대,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물적 및 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통합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주체가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

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였음

- 나아가 교육과정 수정, 협력교수, 평가조정 등 통합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책무 강화 등 장애학생 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에 필요한 사항 제안

-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
-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평가 체제 개선] 공적 특수교육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가 아닌 특수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 활용하는 안을 제안
-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 시도 → 시군구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신설

○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적법절차 권리 보장 등 인권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기권리 옹호 역량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 확대]
-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강화,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안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등학교는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전공과 포함)는 6명과 7명에서 5명으로 각각 1명 또는 2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2조)
-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강화]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로 강화하였으며(안 제43조), 특수교사를 통합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하고, 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진로·직업교육 등을 위해 특수교사 추가 배치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3조)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념 명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고(안 제2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상담지원, 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점역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안 제43조),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하고(안 제44조), 행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동지원 관련 자격 소지 특수교사 배치에 필요한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44조)
-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순회교육 대상에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포함(안 제2조).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을 복지시설에 포함하고, 복지시설에서의 순회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40조), 일반학교에도 순회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40조),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40조)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등록장애인 등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이 장애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학과(모집단위)에 진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였으며,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선발 노력 등을 평가하고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시 이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였음(안 제47조).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전달체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

학의 장애에 그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자격 기준과 직무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고(안 제48조), 최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학생이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입학 기회 확대, 학습지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안 제49조),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51조)

○ 통합교육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안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개념 제안]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음(안 제2조)
-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교원의 책무 확대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 근거 마련]
- [통합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수정, 협력교수, 평가조정 등 통합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관한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34조)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실화,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구현,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확대 등에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안

- [개별화교육계획 명칭 변경 및 협의 기반 교육지원 문서로서의 기능 명문화]
- [특수교육교육과정 성격 및 교수학습 지원·대안평가 실시 근거 마련]
-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시행 근거 마련]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및 다양한 교육지원 내용 명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안

-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2년 7월 22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 55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조승래,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용진, 김남국, 김민철, 김성원,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찬대, 배진교, 서영교, 서영석, 송기현, 심상정, 오영환,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두현, 윤영덕, 윤영찬, 이달곤, 이상현,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재명, 이재정,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전해숙, 정태호, 주철현,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의 기초학력이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
-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9년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및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12,330개의 0.3%에 불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2. 검토 방향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성 강화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권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계와 2016년 개정 이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이원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전달체계의 혼선이 발생
-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 권리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

-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및 제9조)

○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자적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지원인력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8조 및 제29조)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1년 4월 20일(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유기홍의원등 48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유기홍·강대식·강민정·강선우·강은미·고영인·권인숙·김남국·김두관·김민석·김민철·김상희·김예지·김원이·김윤덕·김주영·김철민·류호정·맹성규·문정복·민홍철·박덕흠·박 정·배진교·서동용·서영교·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위성곤·유동수·윤영덕·윤재갑·이광재·이양수·이용빈·이용선·이은주·이정문·이종성·임호선·장철민·장혜영·정찬민·최종윤·허종식

- 2021년 7월 1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의원등 48명),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해진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조해진·강민정·권인숙·김병욱·김예지·김철민·박찬대·서동용·안민석·유기홍·이종성·이탄희·천준호

- 2022년 2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장애계 간담회
(※ 보도자료 : <http://sadd.or.kr/data/16967>)
- 2022년 4월 29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의원등 13명),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별첨]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2021.6.30.)

☞ 2022.7. 이후 적용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1. 추진 배경

-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83.4% 수준(현 대수는 3,914대로 법정대수 4,694대 대비 약 800대 부족)
 - 8개 특별·광역시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서울: 85.1%, 인천: 57.3%)
 - 9개도 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보급률 상당 격차 존재 (경기: 112.8%, 충북 62.1%)

- 지방이양정책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서의 현격한 지역 간 차별
 -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차이
 - 매칭을 돕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유무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차별
 - * 대도시는 공단 위주 운영 <-> 지역도시는 민간위탁 방식
 - 지자체별 상이한 중구난방 운영방식 및 불합리한 환승 체계
 - 비휠체어 장애인용 임차·바우처택시 대수 확보의 어려움

-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법 개정 필요
 - 2021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되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당초 발의된 법안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의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담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인하여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후퇴되어 통과된 상황임.

2. 검토 방향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
 - 중앙정부는 최초 차량 도입비만 일부 보조할 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 이동의 제약과 편차가 심각
 - 지방이양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이동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 이동지원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탑승 위치에 따라서 관외 이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 (예시 : 김해에서 부산으로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김해에서 인근 지역인 양산, 거제, 밀양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할 필요

○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다양화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주 이용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임.
-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임차·바우처택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요금 차이 등으로 인해 비휠체어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 증가
-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구분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지원을 강화

3. 주요 내용

○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의무화

- 지방이양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국가보조금사업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조사 시행

○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강화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임차·바우처택시) 국비 지원 의무화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2년 6월 28일, 천준호의원등 59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천준호.강민정.강선우강은미.고민정.권인숙김경만.김민철.김상희김승원.김영주.김영호김윤덕.
김의겸.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희재남인순.노웅래.류호정박상혁.박영순.박재호박주민.박찬대.
배진교서영교.서영석.신현영심상정.어기구.오영환용혜인.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소영.이수진
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은주.이인영.인재근임종성.장경태.장혜영조승래.조오섭.강득구최종윤.
최혜영.한병도한준호.허영.허종식홍기원.홍정민

- 2022년 9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8. 주거약자지원법 개정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1. 추진 배경

○ 주거권 및 사회권 규약(1990)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권고(2017)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3%가 최소한의 주거에 못 미치며 그중 23%가 장애인임. 장애인의 생애최초주택 마련 소요연수는 평균 8.6년(전국평균 7.7년)이며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74.1%(전국 41.6%)로 주거권이 기본권으로 확보되지 못함(국토교통부, 2015)
- 사회권위원회는 주거와 관련하여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것, 불합리한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 증가하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매커니즘을 도입할 것 등 권고
- ‘적절한 주거’란 점유 안정성, 적절한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경제적 적절성, 최저주거기준 확보, 접근가능성, 적절한 입지, 문화적 적절성을 포괄하는 개념임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인권적 모델의 원칙과 긴급 탈시설 지원 권고(2022)

- 현재 위원회는 한국이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사망에 주목하고,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장애인 단체와 독립 모니터링 매커니즘 협의하여 장애인 긴급 탈시설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 현재 당사국은 장애인을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 보장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지역사회 자립생활 일반논평5(2017)

- ‘주택에 대한 접근’이란 모든 지역에 충분히 많아야 하며 장애물 없는 신규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조가 필요함.
- 지역사회에 소속될 권리는 현재 완전한 사회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대

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장애인이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함. 특히 주거, 교통, 쇼핑, 교육, 고용, 여가 활동 및 소셜 미디어를 언급함.

○ 서울시 지원주택 모델의 전국 확산 필요

- 주거우선지원정책(housing first)에 근거한 지원주택 제도가 2019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 지원주택 제도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은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 요구 중임.

2. 검토 방향

○ 탈시설·탈원화·탈노숙 등 패러다임변화와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주거권 보장

- 현재 시설 및 서비스 운영기관 기반 주거권이 아닌,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권 필요
- 사회권 및 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및 주거안정성은 매우 열악한 수준

○ 「주거기본법」 의 사각지대인 주거약자의 주거우선 지원 정책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 현재 시설, 병원을 중심으로 주거약자의 주거권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및 주거관련법의 한계 분명.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2011.5. 시행, 주거기본법 제17조)은 임의규정이며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 기준, 구조, 성능, 환경요소, 자연재해의 위험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낮은 수준임.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18~'25)에 따르면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 뿐 아니라 교육·일자리 및 서비스등을 복합지원하게 되는데 이 때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의 기존 주거정책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기준에는 불충분함
- 해외의 경우, 최저거주 면적과 유도주거면적 수준으로 나누어 개인의 생활에 따라 사생활보장, 여가생활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차주택도 「주택품질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 과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3. 주요 내용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

- 주거약자의 범위 확장 : 장애인, 노인에 대하여 노숙인, 정신장애인, 청소년 등
- 주거비 및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 추가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종류 명시 : 지원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제공,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주택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의 제공 등 조항 삽입
- 지원주택의 개념 정의, 수요 파악과 공급 계획 수립, 지원서비스와 주택의 통합적 제공, 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 등 포함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와의 연계 규정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년 4월 20일, 심상정의원등 12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심상정·강민정·강은미·정성호·이은주·류호정·이수진(비)·배진교·이소영·용혜인·장혜영·최혜영

- 2021년 9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021년 4월 20일, 장혜영의원등 11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강민정·김예지·이수진(비)·최혜영·허종식

- 2021년 6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9.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1. 추진 배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강화 필요

-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을뿐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
- 법 제정 이전의 건물들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에만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하며 리모델링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이에 많은 시설물들이 리모델링으로 법적용을 피해가는 상황임

○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적용

-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규정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규모와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
-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면적기준 예외적용에 대한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바닥면적기준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 시행,
- 건축시기와 바닥면적에 따라 여전히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됨.

2. 검토 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의 근거 검토

-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 따라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접근권)를 가지며,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 대상시설 범위에 대한 포괄적 하위법령 위임 검토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제7조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대략적인 기준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에 따라 하위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합리적 근거 없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하게 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게 됨.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당해 조항 본문의 위임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함. 대신에, 제5호를 통해 추가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방안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 [별표1]의 내용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기준(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경우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을 모두 삭제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2]의 내용 중에서, 권장사항으로 표시된 것을 모두 의무 사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대신에 소규모(자본금·매출을 기준)이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곳을 위하여, 대안적 조치를 통해 의무를 완화시키는 예외 인정의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소규모 영세 시설주 등에 대한 고려도 담음.

○ 대안적 조치에 대한 절차 규정 검토 및 편의시설 설치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 강화 검토

- 대안적 조치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함. 이와 더불어 대안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항을 통해 안내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대안적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편의증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적 조치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편의증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는 규정을 추가함.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 또는 신설되는 조항(제15조, 제15조의2)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함. 개정 및 신설되는 조항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 만큼, 이를 위반할 시에는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3. 주요 내용

-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
 -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주 등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신설
- 용도변경 이외에도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증축, 개축, 신축)의 경우에만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편의시설 설치, 실내건축(리모델링 등 실내인테리어)의 경우에도 법적용 대상시설 확대
- 편의시설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대안적 조치 신설
 - 시설주등이 1.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재화 진열 2. 장애인 등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상품 배달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대안적 조치에 대한 내용 신설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1년 8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최혜영, 강선우, 김상희, 김승남, 김승원 김한정, 류호정, 박성준, 소병철, 송재호, 인재근, 조오섭, 허종식

-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10. 공직선거법 개정

1. 추진 배경

○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장애인 참정권

- 공직선거법의 장애관련 규정 (접근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적인 수어통역 제공 등) 이 모두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있어 실제 모든 절차와 과정중에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상황임

○ 공직선거법 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급 및 관련규정 부재

- 공직선거법 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
- 지역사회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선거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발달장애유형에 맞는 '알기쉬운 선거정보제공', '그림투표용지', '선거과정에 대한 인적 지원' 등 선거과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요구 확대 및 증가
- 현행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관련 소송 및 인권위 진정 등 진행

2. 검토 방향

○ 발달장애영역에 대한 규정 신설

- 발달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읽기쉬운자료 및 알기쉬운정보제공 등 정보접근권 보장 내용 검토
- 발달장애인의 투표시 결정권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등의 제공
- 발달장애인 기표시 동반기표 및 인적지원 등에 대한 기표보조 제공

○ 시각장애인 투표과정에서의 정보접근권 강화

-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비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과 동인한 정보제공방안 검토
- 점자 이외에 음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 청각장애인 선거과정에서 수어.자막 의무화 규정 강화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연설통신,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 후보자 선거유세 과정 등 선거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수어와 자막제공 의무화 필요

○ 접근가능한 투표소 설치 규정 강화

- 1층투표소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

3. 주요 내용

○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정보접근성 강화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안 제65조제4항).

○ 청각장애인 선거과정에서의 수어·자막 의무화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거나, 단체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제12항 및 제81조제9항 신설).

○ 발달장애인 등 문자해독 불편인을 위한 그림(사진) 투표용지도입

-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50조제1항)

○ 장애인 노령자 등 기표 보조 내용 확대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 등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1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 11명 공동 발의

<발의의원 명단>

최혜영, 김성환, 김한정, 남인순, 류호정, 박주민, 오영환, 이수진, 이재정, 인재근, 조오섭

※ 최혜영의원안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의 발의 제안된 내용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모든 개정 필요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상황으로 병합을 통해 통과시키면 기본적인 개정은 모두 가능

○ 관련 법안 제·개정 발의상황

- 2020년 6월 18일 이인영의원 등 19인
- 2020년 10월 6일 진선미의원 등 11인 (법안 1, 2)
- 2021년 3월 17일 송기현의원 등 10인
- 2021년 3월 25일 오영훈의원 등 11인
- 2021년 4월 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 2021년 6월 10일 김용관의원 등 13인
- 2021년, 7월 2일 김예지의원 등 42인
- 2021년 10월 26일 이은주의원 등 10인
- 2022년 1월 26일 이영의원 등 11인

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 추진 배경

○ 법 제정 이후 15년의 시간 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의 반영 필요

- 2007년 법 제정이후 단 한번의 전면개정없이 시행되어옴
- 특히, 법 제정당시 장애인이 의식주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별의 내용들은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절차 과정 제도 등에 변화가 있는것도 다수 있음.
- 시정명령 관련 조항을 완화하고, 관광에서의 차별금지조항과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조항 등이 신설되었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조항 등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

○ 현재 새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새로운 차별이 발생

-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방역체계가 장애인에게 매우 차별적인 절차로 다가옴, 이에 재난감염 등 위기상황에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 미제공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 사회적으로 탈시설이 가속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이 어려운 상황임.

○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담겼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당시 초기 법안에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초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저항으로 최종 협의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다수 있음, 특히 권리구제와 처벌에 관련한 제도들이 다수 삭제되어 현재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 단체/집단소송의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소액의 다수자가 신의 법적인 권리를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제정논의 초기부터 계속 검토 진행되었으나 결국 개별 차별구제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리됨. 이에 현재 소송제기시 원고들의 대표

- 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계속 문제제기 재검토와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현재 손해배상 법리로는 차별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나 차별시정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하여 실질적 차별행위 억제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2. 검토 방향

○ 전체 6장 6절 총 50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

- 제1장 총칙의 목적과 정의부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까지 모두 재검토
- 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활용되었던 법의 성격과 이후 사회적으로 변화된 부분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함께 검토

○ 장애를 손상중심 의료적인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확대

-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판단하여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 있음. ‘손상중심적’, ‘의료적 모델’, ‘기능적 제한 접근법’의 정의에서 ‘인권적’, ‘사회적 모델’,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한 인권적 사회적 모델로 변화 필요.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기능의 손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내리기는 쉽지만 단편적이고 협소하게 장애와 장애의 범위를 규정. 사회적 모델을 기본으로 정의할 경우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이고 그에 따라 그 판단의 범위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포괄.

○ 차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정의적 내용 검토

- 법이 만들어질 당시 장애인은 정규교육과정조차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학교를 중심으로 법안구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사설 학원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준비 등 필요. 이에 학원 자격증시험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에서 재화.용역 제공 영역에서 현행법이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 하지만 실제 일부 영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차별행위는 제1호 직접차별, 제2호 간접차별, 제3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제4호 광고에 의한 차별, 제6호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차별, 제6호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로 규정. ‘괴롭힘’ 등은 차별행위에

-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판단하지 않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차별행위안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현행 정당한 편의 개념은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물리적 수단만으로 내용 규정. 이에 정책이나 절차와 같은 비물리적인 편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사회상을 반영하여 필요한 신설 규정에 대한 검토

- 재난감염 상황에서의 차별금지규정
- 복지시설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적용
- 탈시설 지원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한 차별금지규정
- 권리옹호 과정에서의 피해자 구제조치와 보호조치

3. 주요 내용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표현을 포괄적 장애 차별 일반으로 수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 모델을 포함하는 장애에 대한 범위 확대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재화 용역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해당 영역에 대한 규정 명시

-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이라 함은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자나 장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동 및 교통수단의 제공, 문화·예술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체육활동 관련 서비스의 제공, 상품의 도소매, 숙박, 오락요식 서비스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단,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차별행위 규정에 ‘괴롭힘’ 조항 규정 포함

-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의 개념에 비물리적인 편의 부분 함께 규정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정책·절차·관행 등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교육과정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발달장애인 구체적명시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의 2.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자료,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 의사소통보조인력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 또는 지원의 제공

○ 괴롭힘 등의 금지 조항에 ‘온라인상’에서의 내용 포함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상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상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대표 발의 추진(예정)

12. 장애인연금법 개정

1. 추진 배경

○ 장애로 인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소득보장제도 필요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통한 소득과 추가비용의 지원 유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1.1만원(2019년 2/4분기 기준)의 48.4%에 불과
-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란 발생하지 않을 ‘장애 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월평균 152.6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소득보장제도를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따라 개선 필요

-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시,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두었으나, 이러한 장애등급제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비판 제기
-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 3급까지 신청 가능.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하인 등록장애인은 소득 하위 70%라 할지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결정과 등급제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및 욕구에 따라 개별화 권고(2014)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요구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1~3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중복 3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단일 3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2019년 기준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은 98만 5,403명이고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52만 1,180명이며,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 46만 4,223명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들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됨.

2. 검토 방향

○ 소득보장 필요도를 고려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2014년, 2017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이었음.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 중 48.9%)
- 전체 장애인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자 장애등급제 폐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전히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예산 증액을 전제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야 함.

○ 가구 단위 보장이 아닌 개인 단위 보장으로 변화

- 가족 부양 중심의 복지를 지양하고 국민의 기본 생계를 국가 책무로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경우, 가구 단위는 아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개인 단위 보장은 아님.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인 가구라고 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감소한다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하고 있음.
-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추세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 없이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급여액에 있어서도 차감 없이 개인 단위로 보장하여야 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 현행법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지원 규모를 약 34만 명에서 약 61만 명으로 확대.

○ 불합리한 부부 감액 폐지 (제6조 제3항 삭제)

- 독소 조항인 부부 감액 폐지

4. 입법 전망

○ 입법 상황

- 2020년 8월 14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 22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최혜영·맹성규·이수진(비)·윤재갑·윤미향·홍영표·안민석·전혜숙·안규백·인재근·황운하·이수진·김영배·허종식·김경만·양이원영·김용민·민홍철·고영인·권철승·이탄희·김남국

- 2022년 6월 10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등 13명 공동발의

<발의의원 명단>

김태년·권철승·김민철·김병욱·김영배·서동용·송옥주·윤영찬·이성만·이원욱·전혜숙·조승래·홍성국

- 2020년 11월 17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 22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국회 요구자료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대향로)
전화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팩스	02-6008-5101
이메일	sadd@daum.net
홈페이지	www.sadd.or.kr
S N S	@sadd420 [Facebook Twitter Telegram Youtube]
후원계좌	국민은행 488401-01-220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